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15년 7월 22일(수) 14:00~16:3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프로그램

가. 개요

- 일시 : 2015. 7. 22.(수) 14:0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회 : 김성준(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나.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10	개회	사회자
14:10~15:00	**발표1.** 교육권에 짓눌린 놀 권리와 쉴 권리	**강순원**(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발표2.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 놀권리 침해 가능성과 현황, 그리고 대안	**노용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위원)
15:00~16:00	청소년 의견청취	**류주영**(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학생)
	토론	**탁경국**(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현소혜**(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명화**(영유아 부모) **조재익**(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천미경**(강원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16:00~16:25	종합토론	참석자 모두
16:25~16:30	정리	사회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차 례

발 표

- **발표1. 교육권에 짓눌린 놀 권리와 쉴 권리** ····· 1
  강순원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 **발표2.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 놀권리 침해 가능성과 현황, 그리고 대안** ····· 19
  노용운·홍민정·김혜령·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 의견청취

- **청소년 의견청취** ····· 89
  류주영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학생)

토 론

- **토론** ····· 97
  탁경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 **『아동의 놀 권리와 사교육』에 관하여** ····· 99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육권에 짓눌린 놀 권리와 쉴 권리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 놀 권리 침해 가능성과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한 Feedback** ····· 105
  오명화 (영유아 부모)
- **토론** ····· 113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 **어린이 놀이 교육정책의 방향** ····· 115
  천미경 (강원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발표1.

교육권에 짓눌린 놀 권리와 쉴 권리

강순원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육권에 짓눌린 놀 권리와 쉴 권리

강순원(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생각해볼 문제

- 왜 놀아야 하고 쉬어야 하는가? 그게 아동인권이고 행복의 조건인가? 우리에게 행복이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 아이들은 노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닌가? 놀이터가 없으면 못 노는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소통하지 못하는가? 따 당하는 아이들은 아무 데도 못 끼는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인가?
- 왜 부모들은 사교육(돈을 주고서)을 시키면서까지 자녀의 행복을 짓밟는가?
- 이런 상황에서 인천선언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한국을 방문해보면 정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가? 글로벌 시민교육은 시대적 당위인가? 우리는 쉬지도 못한 채 또 글로벌 시민교육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청소년인권국제협약의 탄생

- 1924년 국제연맹: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채택
- 1959년 국제연합: 아동선언 발표
- 1979년 국제연합: 세계아동의 해 선언
- 1989년 국제연합: 어린이.청소년인권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Rights of Child, CRC라 칭함) 채택/1991년 한국 정부 비준

어린이.청소년의 기본권리

-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리:** 2조(무차별의 원칙), 3조(아동 최상의 이익)
- **자기발달과 사회적 배려의 권리:** 6조(생명권), 7조(성명 및 국적권), 24조(건강 및 의료지원), 26조(사회보장권). 28조/29조(교육권),
- **자기표현과 의견개진의 권리:** 12조(의사표시권), 13조(표현의 자유), 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5조(결사, 집회의 자유), 16조(사생활의 보호), 17조(정보접근권)
- **행복을 추구할 권리:** 9조(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 20조(결손가정 아동특별보호), 22조(난민 아동보호), 23조(장애아동의 보호), 30조(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보호), 31조(휴식, 여가, 놀이활동)
-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9조(폭력, 학대, 착취), 32조(아동노동), 33조(마약 등), 34조(성착취와 학대), 35조(아동의 약취 유인, 매매, 거래 금지), 37조(아동 고문, 사형 금지), 38조(무력분쟁시의 아동보호), 40조(소년범의 보호)

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놀 권리와 쉴 권리

실학자 이광사(李匡師) :

8살짜리 딸은, 풀잎에 손톱으로 무늬를 놓아/ 비단이라 이름 지어 장사 시늉하고/ 고운 모래로 구슬을 삼고 / 색종이는 오려서 옷을 만들고 / 나무 조각으로 집을 얽어/ 바리 굽에 옹기솥 가마솥 앉히고

E. Erickson:

사춘기 청소년들은 미래의 자유로운 인격체로의 발달을 준비할 수 있는 방랑의 시간인 심리적 지불유예기간moratorium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이 아이는?

전쟁/분쟁 속의 아이들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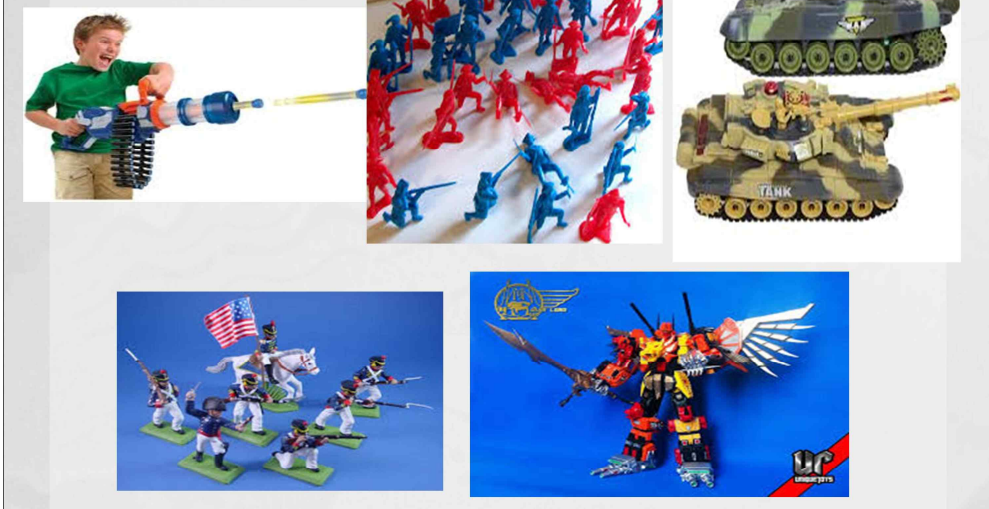
TANK

폭력에 노출된 보육/교육현장
학부모 기자회견
2+2=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우리의 아이들에게 왜 이러나?

풍요로운 사회에서의 괴로운 아이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못 가고,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실패자가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Homo Sapiens로 명명된 이성적인 합리적 경제행위자를 강조하는 교육이 Homo Ludens나 Homo Faber라는 놀이친화적, 노동친화적 개념을 교육계에서 설 자리가 없게 만듬.

*표준화된 행복과 성취라는 틀 안에서, 상대화되고 초라해진 자신을 어떻게 되살리어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함.

- 관련 기사 -

"초등학생 꼽은 한국의 문제점에 '미수다' 미녀들 깜짝 놀랐다."(뉴스엔연예, 2009/0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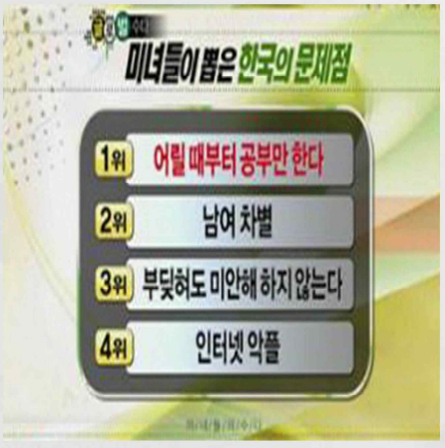

우리학교는 한국 스타일/오바마의 한국 찬양? 미치 앨봄의 비판

2015인천선언을 통해 본 글로벌교육환경

-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층의 요구가 있고, 이러한 요구들은 때론 조화롭고, 때론 갈등이 됨/글로벌 정의의 문제
- 차이(다름)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글로벌 시민성을 갖게 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 for all
- 글로벌화 조건에서 무한경쟁교육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길 / 세계 속의 한국인은?

MDG/SDG에서의 영유아보육/교육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2015

- Goal 1 빈곤타파
- Goal 2 기아탈피/ 인간안보
- Goal 3 전 연령에서 건강한 삶
- Goal 4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체계구축 및 포용적 질교육
- Goals 5 성별 평등
- Goal 6 수자원 지속가능성
- Goal 7 지속가능한 에너지
- Goal 8/9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 및 생산적 고용과 산업화
- Goal 10-17 지속가능한 지구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2030

MDG 교육의제를 EFA(Education For All)로 구체화

1. 학습접근기회의 보편화
2. 학습의 평등성 실현
3. 학습성취도 제고
4. 기초교육의 개념 확대 및 실천
5. 학습 환경 마련
6. 200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좀티엔 선언(1990)

1. 영유아보육/교육 양적·질적 확대
2. 양질의 보편적 무상초등교육
3. 청소년과 성인의 생활기술교육 및 학습기회 요구 충족
4. 성인 비문해률 50%이상 개선.성인(특히 여성)을 위한 기초교육(문해교육) 확대
5. 2005년까지 초등에서의 성별불평등 철폐. 2015년까지 성평등 달성
6. 교육의 질적 개선, 특히 문해, 산술, 핵심 생활기술 면에서 실질적인 성과 달성

다카르 선언(2000)

Post-EFA (무스카트 합의 2014)/인천선언

1. 최소 1년의 무상의무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영유아보육/교육
2. 최소 9년의 양질의 무상의무 기초교육 완성 및 적정 학습 성과 달성
3. 청소년과 성인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해능력과 수리능력 보유
4. 직업교육 및 중등과 고등교육을 통한,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5. 글로벌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혹은 포함하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함양
6. 양질의 교사를 통한 학습
7. 교육 재정 및 국제협력

세계 적 수준에서의 아동교육 환경

• 사회적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화 문제가 쟁점화: 일하는 어머니(working mom)의 육아부담과 방과후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차원에서, 또한 소가족/소자녀화 시대 사회화의 장으로 사회적 보육/교육으로 전환/ 여기서 일하는 부모의 노동권 대 아동권리가 갈등.

• 현재 국가적 보육/교육시대로 들어옴. 교육비와 교육의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형 모델이 대세인 듯 – 돈은 국가가 부담하고,보육/교육의 방향은 자율로.

• 아동인권협약에 기초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비차별, 비폭력 그리고 아동의 흥미를 고려하는 철학에 기초. Homo sapiens적 인간관을 넘어선 총합적 접근 시도

우리 나라의 아동보육/교육 환경?

• 무상보육 및 학교무상급식 법제화는 여전히 논쟁 중이고, 무엇보다 공공비율이 아주 낮음. 선진국형에 집착하지 말고 한국형 모형을 개발/보편적 접근의 의미를 찾아 구체화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가능성 낮음/거대시설의 위험성

• 상업화 논리/ 플라스틱 교구, 전쟁장난감/안전하다? 깨지지 않는다?

• 놀이의 개념 부재/극단화

•사교육에 의한 불평등과 부정의 심화/놀이도 사교육 대상화

• 인권친화적 환경/교육주체들의 균형점 필요/학생인권조례의 구체화

• 문화적 감수성 및 다양성/차별의 체질화/갑질의 일상화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기준/ MDG & SDG은 없다?

로버트 풀검(1972),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 공정하게 행동하라. / 남을 때리지 말라. /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 밖에 나가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라. / 경이로움을 느끼라.

어떻게 할 것인가?

- 아이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신하게 도와주고(Existence), 주체적 인권 인지
- 글로벌 다문화사회에서 유연하고 자유롭게 대처하며 소통의 능력을 넓혀 자유인으로서 사회나 자신 그리고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돕고(Relationship),
- 그 과정에서 자신이 남과 다른 잠재성을 최선의 조건 속에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Growth) 관계자는 가정과 학교에서 여건을 만들어가는 적극적 동인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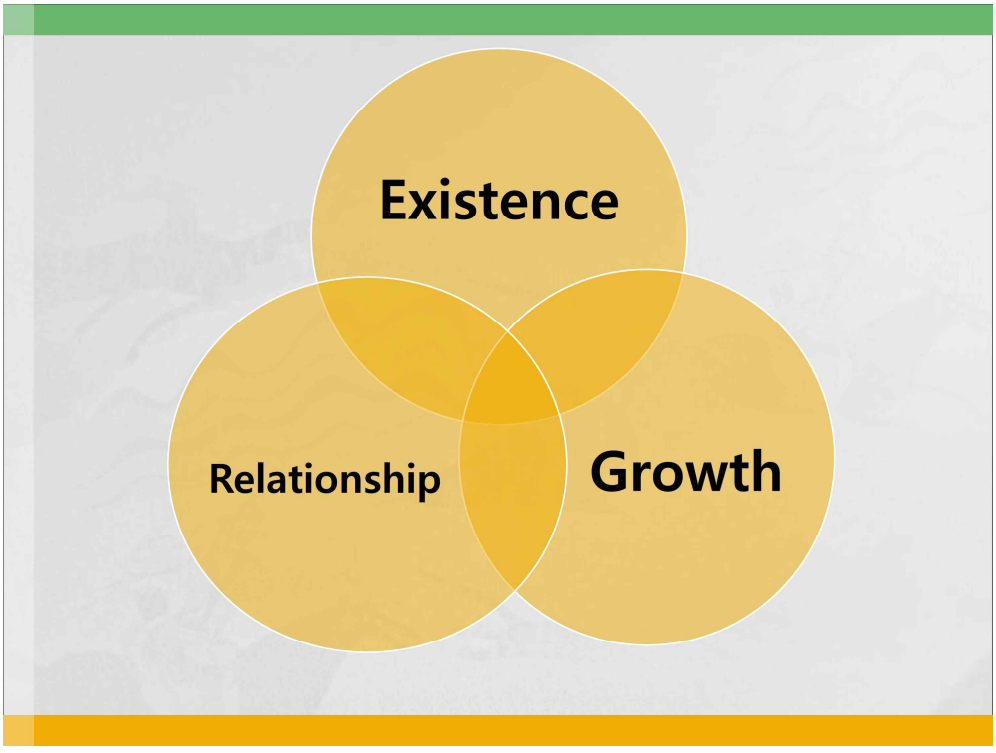

대학 새내기들을 위해 가수 박진영이 쓴 글

20살 때 세상은 승자와 패자, 둘로 갈라진다. 붙은 자와 떨어진 자. 이 두 세상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한쪽은 부모님의 축복과 새 옷, 대학생활이라는 낭만과 희망이 주어졌고, 다른 한쪽은 비로소 깨달은 세상의 무서움에 떨면서 길거리로 무작정 방출되어야 했다. 부모님의 보호도, 학생이라는 울타리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철없던 청소년기의 몇 년이 가져다 주는 결과 치고는 잔인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였다. 나는 비로소 내가 겨우 건너온 다리가 얼마나 무서운 다리였는지 확인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론 승자 팀에 속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 사실을 즐기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정말 나의 20살은 이렇게 승리의 축제로 뒤덮였고, 나는 내 장래를 위한 어떠한 구상,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의 20살은 이렇게 친구, 선배, 여자, 술,춤으로 가득 찼다. 나는 세상이 둘로 갈라졌으며 나는 승자팀에 속해 있었기에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 후 나는 놀라운 사실들을 또 목격하게 되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두 개의 세상이 엎치락 뒤치락 뒤바뀌며 그 2세상이 다시 4세상으로 8세상으로 또 나누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었다. 대학에 떨어져 방황하던 그 친구가 그 방황을

내용으로 책을 써 베스트 셀러가 되는가 하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던 친구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되기도하고, 춤을 추다 대학에 떨어진 친구가 최고의 안무가가 되기도 하며 대학에 못 가서 식당을 차렸던 친구는 그 식당이 번창해서 거부가 되기도 했다. 20살에 보았던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두 세상은 어느 순간엔가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없는 듯 했다. 20살,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20살 전에 세상이 계속 하나 일 줄 알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좌절했듯이 20살에 보았던 그 두가지 세상이 전부일거라고 믿었던 사람 또한 10년도 안되어 아래 세상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다.

반면 그 두가지 세상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꿈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했던 사람은 그 두 개의 세상의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다. 지금 20살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자, 아니면 불합격자의 두 세상 중 하나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승자는 자만하지 말 것이며, 패자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살에 세상이 둘로 달라지는 것으로 깨달았다면 7~8년 후에는 그게 다시 뒤바뀔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0살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일찍 출발한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며 늦게 출발한다고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음 속 이야기들

-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갈망하라, 우직하게 전진하라(Steve Jobs)
- 거꾸로 가게 하는 교육이 참교육이다(홍순명)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우중)
-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s (간디)
-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결정하고, 재학습하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앨빈 토플러)

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발표2.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 놀권리 침해 가능성과 현황, 그리고 대안

노용운·홍민정·김혜령·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1]놀권리 침해가능성과 현황, 그리고 대안

노용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위원)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김혜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최현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Ⅰ. 아동 놀권리와 이에 대한 문제제기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나 공터에서 어울려 노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겨 다니며 무언가를 배우는데 더 익숙하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배움이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끊임없는 경쟁'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그 경쟁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0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의 놀 권리를 규정한 제31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은바 있다.

"협약 31조[2]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다른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본 발제에서도 고등학생의 사교육까지 분석대상으로 함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 같은 권고의 배경으로 '교육제도내의 극심한 경쟁', '사교육에 의한 권리 침해', 이로 인한 '학생의 스트레스' 등을 지적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2011)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놀 권리 침해가 과도한 학습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사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많지 않지만, 아동의 놀 권리 침해와 관련한 연구는 과도한 학습에 따른 시간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 시간부족을 사교육이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거의 없다. '과도한 학습'으로만 단순화하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제시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는 주로 놀이 프로그램개발, 시설확충, 이를 위한 정책 등 주로 여건조성으로 귀결되고 있는 듯하다. 황옥경 등(2014b)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놀이 및 여가시간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놀이정책(프로그램)개발, 기반시설 조성, 캠페인/교육 등을 통한 인식전환을 주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교육의 심각성을 밝히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황소영 등(2010)은 67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여기서 놀 권리 침해의 원인으로 과도한 학습량을 지적하고 있지만, 보다 정밀한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경준 등(2014)의 연구에서는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는 확충되는 반면 시간/경제적 여건부족의 심각성을 제시하였으나, 공교육개선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본 발제의 문제인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공교육 개선, 놀이시설확충, 여가프로그램개발은 아이들의 절대적 놀이시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놀이시간을 줄이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지금까지 놀이시간 부족과 관련하여 제시되지 않았던 사교육을 전면에 등장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제의 핵심 질문은 2가지이다.

1. 아동의 놀 권리는 사교육으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가, 현실은 어떠한가?
2.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2가지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사교육과 놀 권리 침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이 어떻게 아동의 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동의 놀 권리와 사교육이 어떻게 대척점이 서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교육의 현실과 근본원인을 제시할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본 발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Ⅱ. 사교육이 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유엔의 정의와 '노는 것'에 대한 개념을 유엔아동권리협약[3]에 근거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발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놀 권리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정의에 대해서 2013년에 유엔은 일반논평[4]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놀 권리의 중요성을 다음과 특징을 들어 설명하였다.[5]

---

3) 유엔아동권리협약, 외교통상부 공식 국문번역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Ⅱ, 2011(본 발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문은 공식번역본을 인용함)

4) General comment No. 17(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icle 31)

5) 유엔의 일반논평 중 Ⅲ. The significance of article 31 in children's lives를 발췌·정리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1. 또래 또는 어른과의 관계형성: 혼자서도 놀 수 있지만, 또래 아이들, 잘 훈련된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음. 이는 관계형성을 통해 문화/전통의 이해 및 계승의 차원과 사회성을 기르는 차원에서도 중요함
2. 자발성과 자율성: 아동의 의사에 따라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른들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됨
3. 자유롭고 창의적 의사표현: 아동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수단은 상상극, 노래, 춤, 그림, 게임 등 어떠한 수단도 가능하며 제약받지 않아야 함
4. 의무가 없음: 놀이시간에 해야 할 의무(목표)가 없으며,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음

아동의 놀이에 필요한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우리나라 교육부에 해당)이 2002년 9월 30일 중앙교육심의회에서 발표한 '아동의 체력향상을 위한 종합적 방책'(子どもの体力向上のための総合的な方策について)에서 바깥놀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시간, 공간, 친구' 3가지를 꼽았으며, 이 3요소의 감소를 아동의 체력저하 원인중 하나로 분석하였다.(外遊びに不可欠な要素である時間, 空間, 仲間の3つの減少) 또한 일본의 대표적 놀이연구가인 센다 미츠루(仙田満, 1993)도 아동의 놀이에 필요한 필수요소로 '시간, 공간, 친구' 3요소를 적시하고, 이들의 부족이 현대사회에서 아동의 놀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6]. 이부미(2009)는 공동육아 놀이문화의 구성요소로서 가치(신념), 공간, 시간, 놀이감을 구성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유엔의 일반논평(2013)에서는 정부의 투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발적인 놀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time and space)'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황옥경 등(2011a)은 진짜 놀이를 위해서는 무계획성, 무목적성, 무강제성이 있어야 하며, 즐거움, 자유로움, 도전성/융통성, 자기 주도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하여 본 발제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휴식과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고, 자

6) 仙田満 · 岡田英紀(1993) こどもの遊び環境の構造的変化に関する研究 - 横浜 山形における経年比較調査による -都市計画学会論文集 都市計画学会論文集 28, 763-768, 1993

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제에서는 놀 권리의 특성을 4유3무로 규정한다.

〈표 1〉 놀권리의 특성

4유(有)	3무(無)
놀이시간	무목적성
의사표현의 자유(아동의 의사존중)	무강제성
자기주도성	무계획성
도전성(창의성)	-

4유는 아동 놀 권리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이는 놀 권리를 누리는 아동의 입장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3무는 아동 놀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경계해야 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나 여타 프로그램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시된 7개의 요소들은 놀 권리의 구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본 발제에서는 7개 항목 전체를 살피지 않고 놀 권리를 누려야 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4유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사교육이 놀 권리의 4유 요소 중 어느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되어 놀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애석하게도 사교육은 놀 권리의 특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의 특성은 4유 요소 중 놀이시간과 의사표현의 자유(아동의 의사존중)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한 사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미리 배우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진학에 대비하기 위해 내신관리 차원에서 교과목을 중심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로 한 보습학원에도 다니고 있다. 여기에 기본소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체능 등 갖가지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학원에 간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두 번째로 사교육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대부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령이 낮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아이에 대한 '열심'에 의해 아동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가 주도하는-부모가 결정하기는 하지만, 사실 학원의 불안마케팅에 속는 것일 수도 있다-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2장에서는 '사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학생의 자기주도성 결여'를 중심으로 아동의 놀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살펴본다.

본 발제에서는 분석대상을 영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정의하는 아동이란 '만 18세의 모든 사람[7]'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의 아이는 고등학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1. 사교육의 놀이시간 침해

사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동 놀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실태를 살펴본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지원인력, 놀이감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여기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면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다.

아동이 놀이와 관련한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을 들 수 있다. 즉, 과도한 학업이 놀기위한 시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유엔의 일반논평도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Pressure for educational achievement)'이 놀이시간의 감소와 연결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논평의 예시 중 학업부담과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제1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학문이나 지식습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확대로 인한 놀이 참여의 감소[8)]
- 보충학습, 숙제로 인한 자유로운 활동(놀이)시간의 침해[9)]

이러한 가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과도한 학습량 또는 사교육에 의해 '놀 시간'을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자.

실태분석을 위해 우선 통계청 2014 사교육비 조사(2015)결과에서 발표된 학습시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다. 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그림 1〉 참여학생기준 학교급별 정규교육이외 학습시간[10)](시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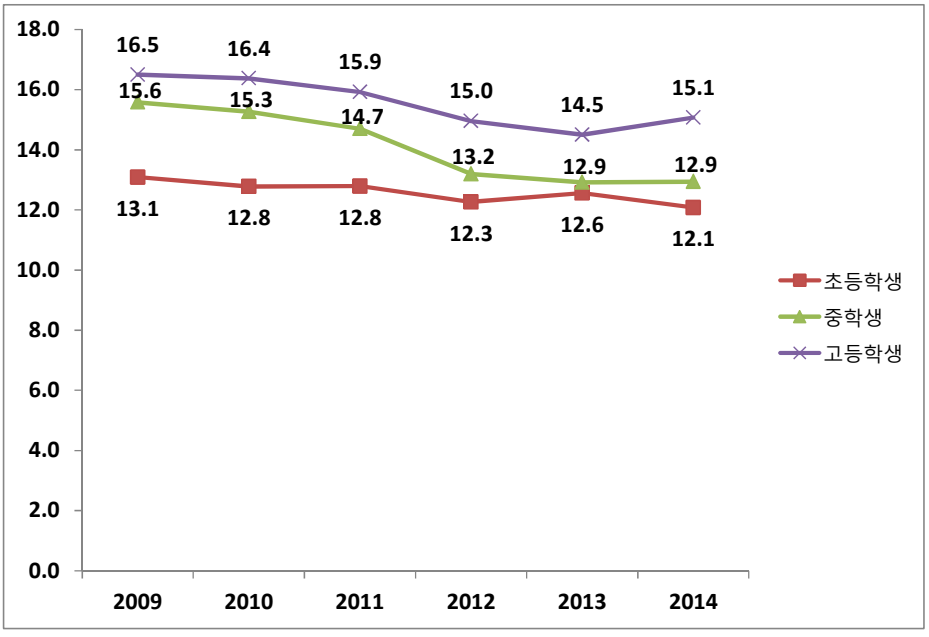

8)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increasingly focused on academic targets and formal learning at the expense of participation in play and attainment of broader development outcomes

9) Extra-curricular tuition and homework are intruding into children's time at the expense of freely chosen activities

10)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사교육과 방과 후 교실 참여시간을 합산한 것이며,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시간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본 발제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추가적인 학습시간을 실질적 사교육시간으로 간주하며, 사교육과 방과 후 학교 참여시간으로 구성된다.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고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를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실질적 사교육시간은 초등학생이 주당 12.1시간, 중학생이 주당 12.9시간, 고등학생이 주당 15.1시간으로 상급의 학생일수록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통계청 기준 사교육과 방과 후 학교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통계청 기준 사교육의 비중은 초등학생이 67.4%(8.1시간), 중학생이 72.7%(9.4시간), 고등학생이 53.6%(8.1시간)에 이른다. 학교급과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주당 약 8.5시간을 사교육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정규교육과정 이후 학습시간의 약 65%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사교육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는 방과 후 학교 참여시간이 월등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방과 후 학교 시간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3.5시간인 방과 후 학교 시간이 고등학교에서는 7시간으로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참여 현황을 좀 더 살펴보자. '2014년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11]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99.9%(6,148개교), 중학교의 100%(3,218개교), 고등학교의 99.9%(2,320개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비율도 초등학생 73.1%(199만 여명), 중학생 64.6%(111만 여명), 고등학생 74.7%(137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약 71.2%가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보육의 필요에 의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의 비율이 68.9%로 교과비율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교과 비중이 84.4%로 늘어나게 된다. 많은 학생이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고등학생의 놀 권리는 학교 당국에 의해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1)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전수조사 결과임(2014년 4월 기준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2〉 참여학생 기준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 평균 참여시간(주당 평균시간)

사교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생	9.8	9.4	9.2	8.7	8.4	8.1
중학생	11.2	10.7	10.1	9.3	9.4	9.4
고등학생	8.0	7.8	7.8	7.7	7.7	8.1
방과후 학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생	3.2	3.3	3.6	3.6	4.1	3.0
중학생	4.4	4.6	4.6	3.8	3.6	3.6
고등학생	8.5	8.6	8.2	7.3	6.8	7.0

이외에도 학습시간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으로 OECD 평균보다 약 3시간 정도를 더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3시간 49분, 독일 5시간 2분, 핀란드 6시간 6분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시간이다[12]. 주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OECD평균보다 약 15시간 정도를 더 학습시간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교육 과목 중의 하나인 수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PISA 2012 결과보고서(2013)에서도 수학과목에 대한 방과 후 주당 수업시간 참여가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4시간 이상 참여하는 비중이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4시간미만 비율도 그리스, 이탈리아(39.8%)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PISA보고서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한다.

12) 좋은교사 편집부,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 좋은교사 2015.7월호, p.51에서 재인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2〉 수학과목 방과후 수업 주당 참여시간(영여별 참여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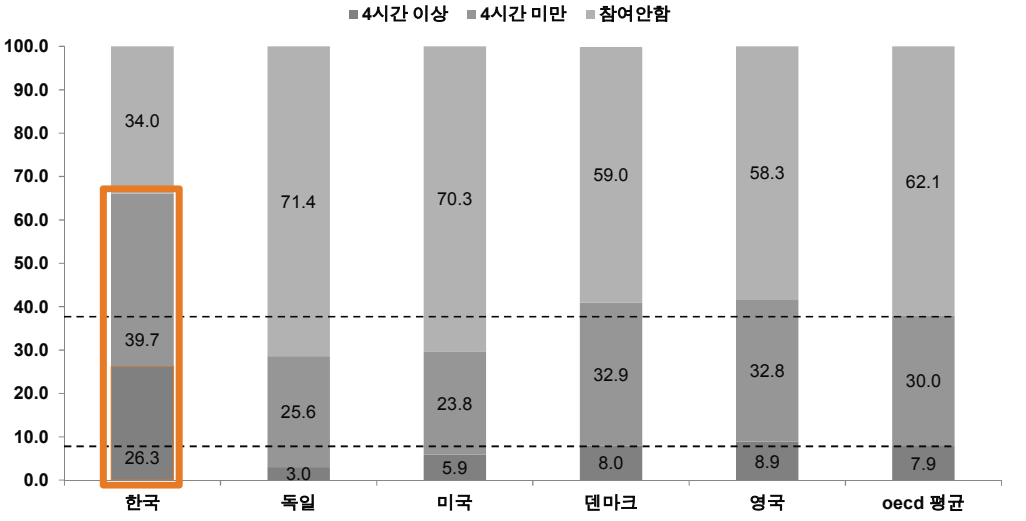

통계청 2014 생활시간 조사(2015)에서 학교급에 따른 학생의 활동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5년마다 한 번 씩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여 노동, 복지, 문화, 교통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적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조사 대상은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 3회(7월, 9월, 12월)에 걸쳐 조사되었다. 본 발제에서는 2014년 조사 중 9월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이유는 2009년과의 비교를 위함이다.

본 발제에서는 생활시간조사의 항목 중 '학습과 교제',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을 활용하였다. 학습시간의 경우, 학교활동과 학교활동 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활동에는 학교수업, 학교수업간 휴식, 학교자율학습, 학교행사, 기타학교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학교활동외 학습은 학원수강, 방송·인터넷 수강, 스스로 학습, 기타 학교활동외 학습 등으로 구성된다. 본 발제에서는 학교활동외 학습을 사실상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으로 간주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이다. 학교활동 중에서도 자율학습은 별도로 제시한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 포함되는 활동은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놀이시간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제외한 모든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으로 한다. 왜냐하면, 놀이를 위한 친구의 필요성,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창의성 등의 놀이 특징을 감안한다면 미디어를 이용한 놀이는 아동 혼자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 총 학습시간은 6시간 49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학교활동외 학습시간[13]이 2시간 14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요일의 경우, 학교활동외 학습시간이 1시간 24분, 일요일은 58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자율학습 시간은 평일 12분, 토요일 4분으로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반면 놀이시간은 평일에 약 2시간 21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3〉 초등학생 학습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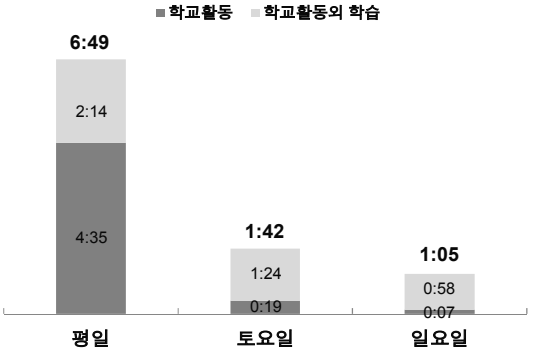

〈그림 4〉 초등학생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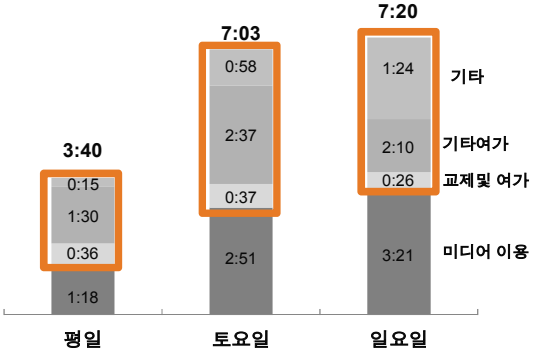

중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은 평일 8시간 41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학교활동외 학습 시간이 2시간 40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비교했을 때 전체 학습시간은 1시간 52분이 늘어났다. 또한 토·일요일 모두 3시간이 넘는 학교활동외 학습을 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2배가 넘는 시간이며, 주말에도 본격적인 사교육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자율학습은 평일 20분, 토요일 2분으로 초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여가활동 중 놀이시간은 평일에 2시간으로 초등학생보다 21분이 짧다.

13) 학원수강, 방송·인터넷 수강, 스스로 학습, 기타 학교활동외 학습 등으로 구성되며, 본 발제에서는 해당하는 시간을 사실상 사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으로 간주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5〉 중학생 학습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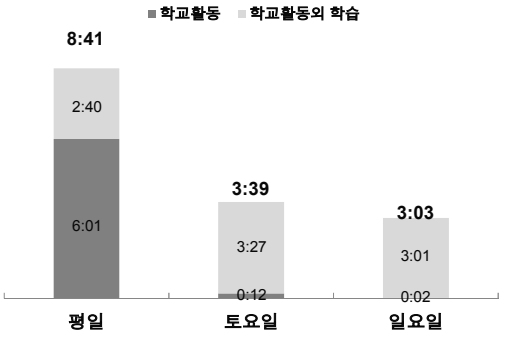

〈그림 6〉 중학생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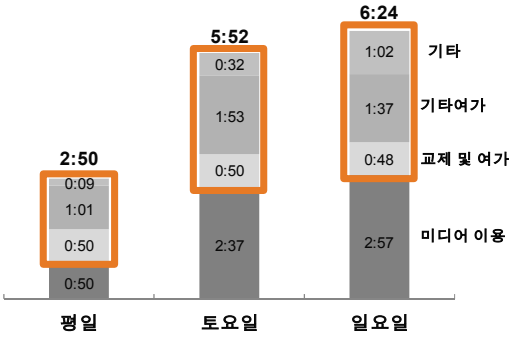

고등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은 평일 10시간 13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학생과 비교했을 때 전체 학습시간은 1시간 32분이 늘어난 시간이다. 이 중 학교활동외 학습시간이 1시간 52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지기 때문에 평일 사교육시간이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학교 자율학습시간을 보면 평일 1시간 36분, 토요일 36분, 심지어 일요일에도 14분 정도가 조사되고 있다. 중학생과 비교하여 평일에 늘어나는 학교활동시간은 자율학습시간이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학교활동외 학습시간은 토요일이 3시간 57분, 일요일이 3시간 47분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유사한 시간을 보이고 있어 중학교에 시작한 주말사교육이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놀이시간은 평일에 1시간 42분으로 초등학생보다는 39분, 중학생보다는 20분이 짧다.

〈그림 7〉 고등학생 학습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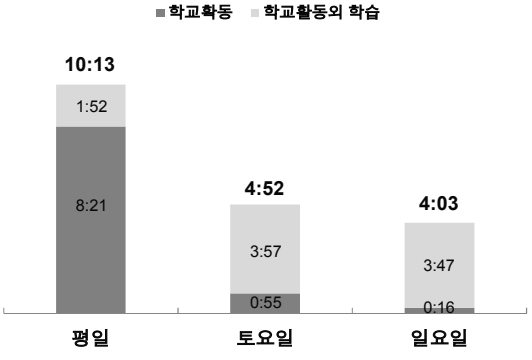

〈그림 8〉 고등학생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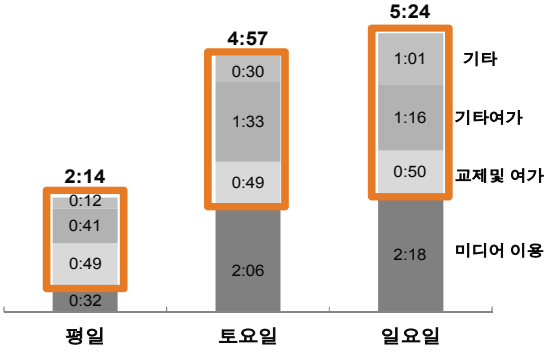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상의 학교급별 학습 및 놀이시간을 정리하면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정규수업외 학습 시간이 이른바 '매우 놀기 좋은 시간'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위 자료를 기준으로 각 학교급별 등교, 하교 및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을 평일을 기준으로 가상으로 만들어보았다. 이때, 하교후 개인정비시간, 즉 집에 들렀다 간식을 먹는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등의 시간을 90분으로 일괄 가정하였다.

〈그림 9〉 학교급별 학생의 가상 학업관련 평일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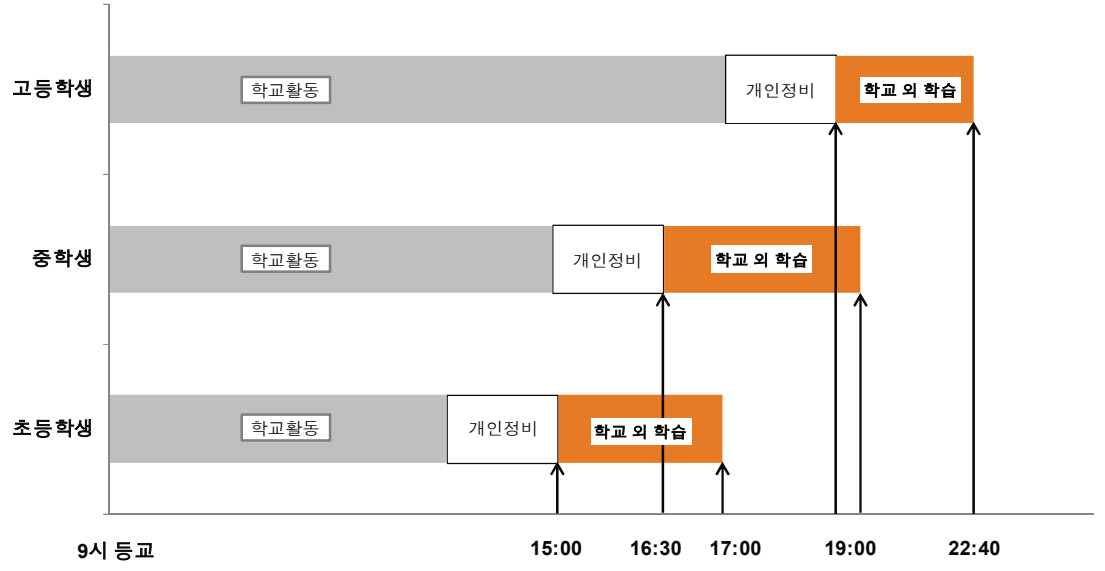

학교급과 관계없이 9시 등교를 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생은 오후 1시 30분경에 하여, 3시부터 5시까지 사교육을 받게 된다. 중학생의 경우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경까지 사교육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대략 오후 7시부터 10시 40분정도까지 사교육을 받게 되는 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2014 생활시간 조사(2015)에서는 학교활동외 학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초등학생 16:00~18:00, 중학생 17:00~22:00, 고등학생 21:00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가상의 학업관련 평일 시간표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학교활동외 학습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원이

14) 통계청의 행위자 비율은 해당 활동을 10분 이상 지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위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학교외 학습 시간은 해당 활동의 행위자 비율이 높은 시간대를 별도로 제시한 자료임(2014 생활시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비중이 높은 편이다. 평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72.5%, 중학생 64.6%, 고등학생 36.1%[1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학교활동 이후 학원수업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아동의 놀이시간, 그 중에서도 황금시간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학원 등을 비롯한 사교육이 버티고 있다.

둘째, 토요일과 일요일의 학습시간이 중학교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까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초등학생은 약 1시간 11분, 중학생은 약 3시간 14분, 고등학생은 약 3시간 52분씩 주말에도 학교활동외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을 지난 2009년도 조사와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약 16분 정도 줄었으나, 중학생은 약 42분, 고등학생은 약 30여분 정도 더 늘어났다[16]. 2009년과 비교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주말 사교육 시간이 더 늘어난 셈인데, 주말에도 여전히 학업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의 주요 원인인 입시를 고려했을 때, 입시 부담이 중학생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평균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행위자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토요일/일요일 학원수강시간을 보면 중학생은 2:33/2:26, 고등학생은 3:21/3:00으로 나타나고 있다[17]. 행위자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주말까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학습부담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학원만을 고려했지만, 방송·인터넷 학습, 개인과외까지 고려한다면 위 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코 이 시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전체적으로 보면 평일을 기준으로 상위 학급으로 올라갈수록 학습시간은 길어지는 반면, 놀이시간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에 비

조사, 통계청(2015))

15)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행해지는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하교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학원에 대한 참여율일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16) 토·일요일에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약 1시간 27분, 중학생 약 2시간 32분, 고등학생 약 3시간 22분을 정규수업 외 학습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9 생활시간조사, 통계청(2010))

17) 각각 참여자 비율은 중학생 41.1%/19.0%, 고등학생 37.9%/25.0%로 나타남

해 고등학생은 학업시간이 약 3시간 이상 많고 놀이시간은 약 40분 정도 더 적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놀 권리에 필요한 놀이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진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급학교의 학업부담이 단순히 시간적 압박을 넘어 심리적 압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늘어나는 학업압박과 줄어드는 놀이시간으로 고등학생은 전체 아동 중에서도 가장 놀 권리 침해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림 10〉 학교급별 학업 및 여가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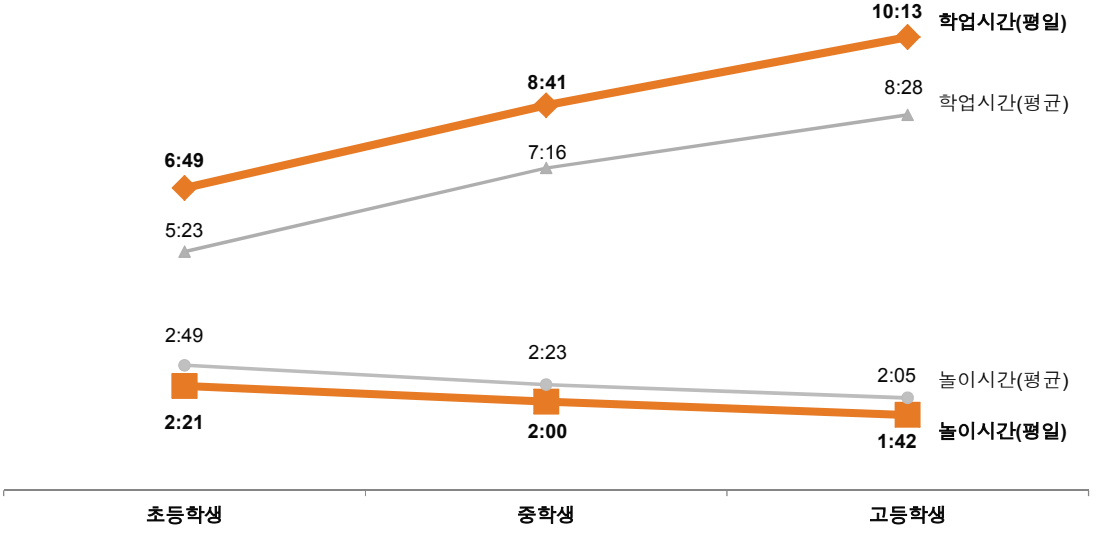

또한 놀이시간을 2009년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약 3시간 10분, 중학생은 약 2시간 39분, 고등학생은 약 1시간 59분이었다. 초등학생은 약 50분, 중학생은 약 39분, 고등학생은 약 17분이 줄어들었다. 절대적 놀이시간이 학교급과 관계없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평일을 기준으로 학업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이 약 60분, 중학생이 약 17분, 고등학생이 약 34분 정도 줄어들었다. 학업시간 축소가 놀이시간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을 미국과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생활시간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를 참고하였다. American Time Use Survey는 2003년부터 노동통계국에서 시작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의 미국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15-18세 응답자는 평일에 약 6시간 44분, 토, 일요일에 2시간 51분의 학습(Education)시간을 보이고 있다[18]. 평일에 주된 학습시간은 학교수업(5시간 17분)과 학교에서 주어지는 숙제(Research/Homework for class for degree, certification, or licensure)(1시간 08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토·일요일은 주로 숙제를 위한 시간에 주로 할애되며 각각 약 2시간 06분(토요일), 2시간 38분(일요일) 정도이다. 이를 한국의 학생과 비교하면 한국학생이 평일에 약 3시간 29분, 토요일에 약 2시간 1분, 일요일에 1시간 12분을 더 공부하고 있다.

놀이시간[19]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 학생의 약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2시간 5분정도인데, 미국학생은 약 4시간 3분이다. 결국 우리나라 학생은 미국학생과 비교하여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놀이시간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18) American Time Use Survey 홈페이지(www.bls.gov/tus)에 공시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15-18세의 응답자가 1st Tier 중 Education 항목에 응답된 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시간임(응답수-평일:154, 토요일: 41, 일요일: 42)

19) 본 발제에서의 놀이시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생활시간 조사에서도 TV 및 라디오 시청시간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11〉 한국과 미국고등학생의 학업시간 비교[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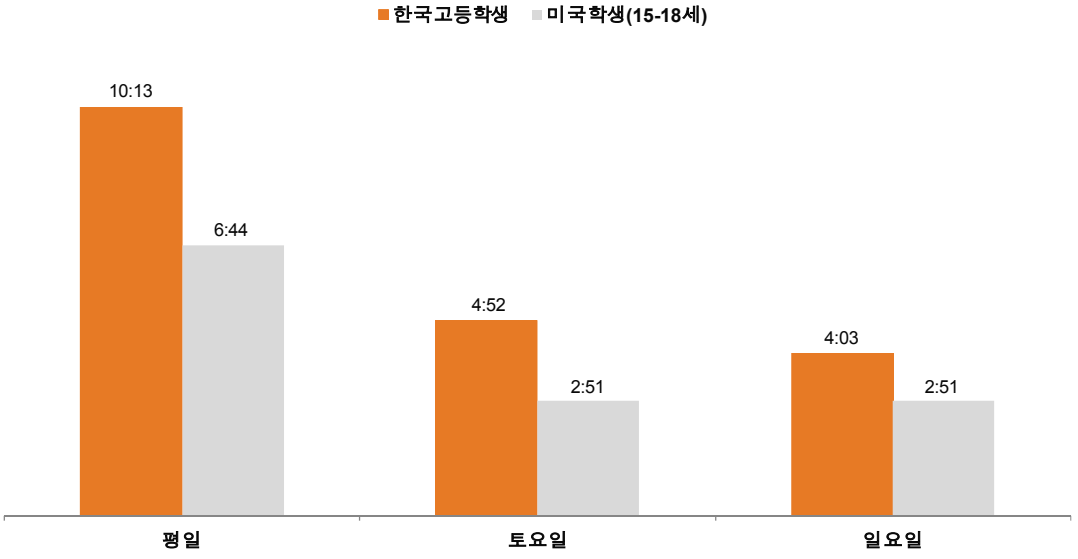

2. 사교육에 의한 자기결정권제약

사교육에 참여하는 의지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숙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학년일 경우 부모의 의사결정이 많이 반영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성취결과에 따라 경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혜숙 등(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과 부모사이에 사교육이 이미 교육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확실한 학습목표나 정확한 교육정보에 근거를 두고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사교육 의식조사 중 '사교육 참여여부 결정 주체'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통계청이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사교육비 조사와 함께 사교육과 관련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원래 자료에는 결정주체를 어머니, 아버지, 학생본인, 형제자매 및 친인척,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본 발제에서는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기타를 하나

20) 한국의 학업시간은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평균을 구한 시간이기 때문에 참여자를 고려하면 그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미국학생의 학업시간은 참여자의 시간을 계산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항목으로 묶어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우선 학교급과 관계없이 부모의 비중이 매우 높다. 예외적으로 최근 2012, 2013년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생본인의 비중이 50%를 약간 상회했을 뿐이다. 이는 사교육 참여여부가 아동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조사[21]결과를 살펴보자. 방과 후 희망활동을 묻는 질문에서 주 양육자와 아동의 1, 2순위 응답을 중복응답 처리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우선 주 양육자(부모)는 학원이나 과외를 가장 많이 희망(49.2%)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55.6%로 더 많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다. 아동은 친구들하고 놀기를 가장 많이 희망(48.7%)하지만, 현실은 학원이나 과외(54.3%)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아동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학원에 보내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여부 결정주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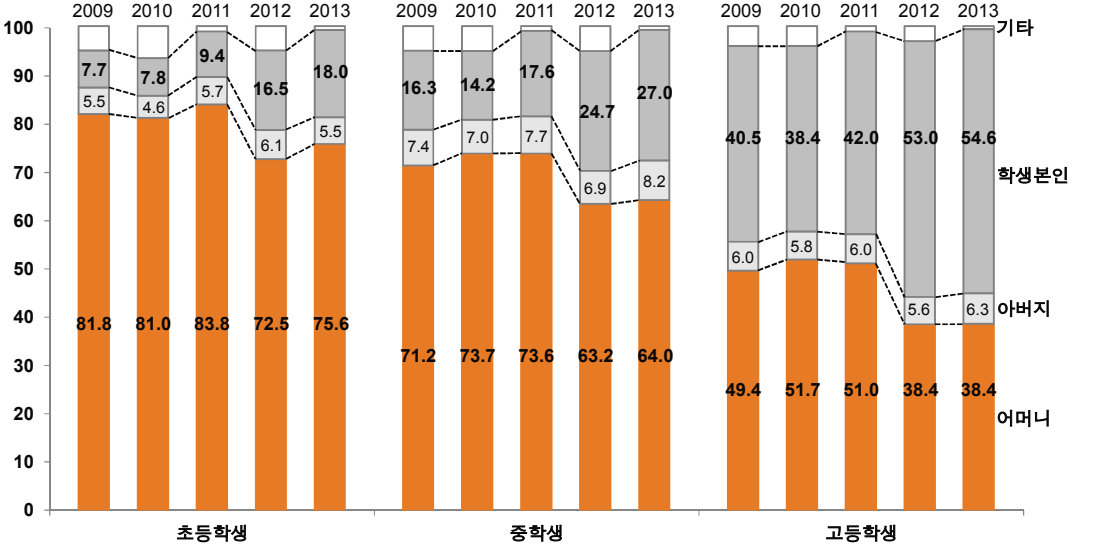

21)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사되며, 아동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표로 하며, 2013년 조사에서는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4,002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두 번째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초등학생의 경우,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보고서(2013)[22] 중 강도윤 연구원이 발표한 '원하지 않는 사교육은 어린이 권리침해일까?'라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한다.

> "어른들은 말을 잘 안 듣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부드럽게 표현은 하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낙오할 수 있다 하여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중략)...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사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원하는 공부를 맘껏 하지도,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효과를 보았다는 아이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중략)...어른들이 어린이이기에 판단이 미숙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여 마치 스스로 사교육을 결정한 것처럼 만드는 것, 즉 원치 않는 사교육을 받는 것은 어린이 권리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이 올라가면 진학에 대한 압박, 경쟁심화 등에 직면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사교육에 대한 필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김혜숙 등의 연구(2011, 2012)를 고려한다면, 과연 학생본인이 전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사교육이 일종의 '문화'로서 각인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부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까지 각인이 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동 자신이 놀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포기의 심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교육은 그 특성상 아동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 바로 이점에서 앞서 언급한 놀 권리의 특성 중 아동의 의사표현의 자유(아동의 의사존중)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할 만 하다. 아동의 놀이시간을 침해하고 있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배제되고 있다. 사교육에 의해 절대적 놀이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2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어린이 연구원을 위촉하여 이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발간한 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현실은 놀 권리 침해가 단순히 양적인 시간 침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아동이 처한 사교육현실은 어떠한가?

본 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사교육의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학령별로 구분하여 해당학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의 대표적 현실을 보여준다. 전술한 대로 영유아에서 시작하여 고등학생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영유아 사교육현실

영유아 사교육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통칭한다. 영유아 사교육의 특징은 첫째, 시장규모 및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와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양미선 등(2014)[23]의 '영유아 육아·보육비용 추정연구 Ⅱ'에 따르면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는 약 3조 2,2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규모는 전년대비 22.2%(5,847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대비 약 3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사교육비 지출 아동은 74.3%로 지난해보다 6.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경우 94%의 아동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이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현재 영유아(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통계는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13〉 영유아 사교육비 추정규모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영유아 사교육비의 전체 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에서 추정된 사교육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또한, 영유아 평균 사교육참여 비율이 68%(2013)에서 74.3%(2014)로 증가하였다. 이 역시 초·중·고생의 사교육참여 감소[24]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1인당 사교육비의 증가 규모도 영유아가 훨씬 높다. 통계청은 초·중·고생의 1인당 명목사교육비가 3천원 증가했다고 했는데, 육아정책연구소의 결과는 3만원으로 10배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 광풍이 영유아 단계로까지 내려'왔다고 논평하기도 하였다[25].

이렇게 증가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두 번째 특성은 영어 조기교육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슬기, 최현주(2014)는 영어교육이 시작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하였다[26]. 영어교육 최초 시작시기를 묻는 질문에 유치원생 부모는 만3세, 초

24)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생 사교육참여율은 68.8%(2013), 68.6%(2014)로 감소함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1년 만에 3만원이나 증가', 2015.04.22.
26) 본 연구에서 2014년 9월~10월 동안 만5세 유치원생 부모(1,911명), 초중고 학부모(5,717명), 서울·경기지역 유치원원장·교사(387명),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담임교사(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등학생 학부모는 만5세, 중학생 학부모는 초1학년, 고등학생 학부모는 초3학년으로 응답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영어교육의 시작시점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13).

〈그림 14〉 영어교육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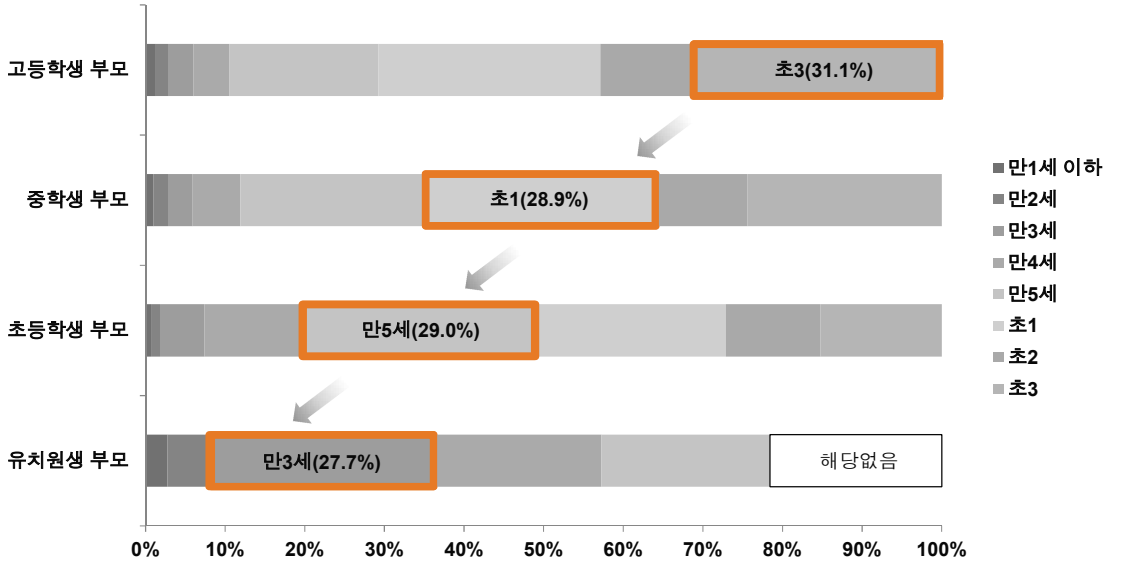

이 같은 영어 조기교육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현주(2015a)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27]. 전문의들은 대부분 조기인지교육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고, 이에 따른 증상으로 '낮은 자신감', 부모와의 관계 악화', 집중하고 못하고 산만함' 등을 주요사례로 응답하였다.

영어조기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경로로 보육기관을 지목할 수 있다. 양미선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기관으로 어린이집(54.9%) 또는 유치원(88.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보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특별활동이 있는데, 과목별 특별활동비율을 보면 영어가 단연 압도적이다(어린이집: 84.3%, 유치원: 62.8%).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 참여 이유를 물었을 때,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어린이집(44.8%), 유치원(30.2%))', '이동없이 다양한 교육받을 수 있어서(어린이

27) 소아정신의학과 전문의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각 응답자는 전문의로서 14년의 평균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집(28.2%), 유치원(33.8%))'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의무 참여 비율이 50%수준, 유치원의 경우에는 68%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모가 거절하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은 특별활동에서 연령에도 맞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다른 아이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나누게 된다. 이를 통해 아이가 건강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를 맺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하루일과가 너무 촘촘하다. 그 중심에 특별활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기자회견문[28]을 보자. 회견문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이 예체능 체험활동보다 인지교육성향이 강한 영어 과목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교육업체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장에 진출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는 물론 부모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노출되고 있다. 그것도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 외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조기영어 실태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문제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비싼 교습비, 입학 시 레벨테스트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학습노동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상희 의원실이 2014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29]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시간은 월 5,575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 5일-한 달 20일 수업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시간 40분의 영어 교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루 4시간 40분의 교습시간은 초등학

28)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단체 연대 토론회·기자회견 결과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년 12월 17일자 보도자료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 결과보도(2014.07.1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의 7교시에 해당하는 시수로, 취학 전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학습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유아대상영어학원–초등학교 수업시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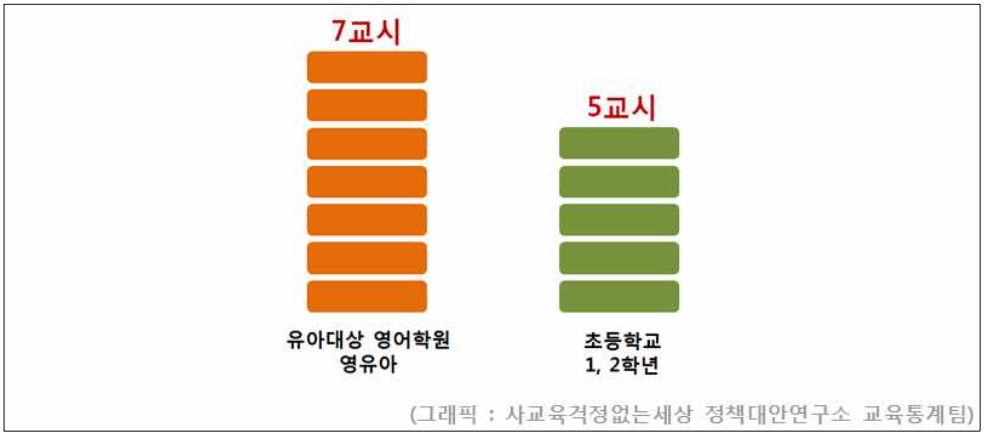

시간뿐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우는 학습내용도 영유아 단계에 적합한 놀이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유아영어학원 역시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이념이나 목표로는 '영어교육'만이 아니라'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시간표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 Phonics, Writing, Conversation 등의 영어 관련 교과목으로 채워지며, Math, Science, Gym 등도 영어로 이루어진다. 〈그림16〉, 〈그림17〉에 제시된 몇몇 유아대상영어학원의 시간표를 보더라도 외국어 학습 위주의 촘촘한 시간표가 눈에 띈다. 영어학원의 교육과정은 대략 하루의 2/3 이상이 영어 교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Phonics, Reading, Writing 등의 분절적 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Spelling Test, Grammar가 추가되는 등 높은 학습강도를 보인다. 또한 영어 관련 교과가 아닌 수학, 과학 등의 교과도 영어로 진행되기에 학습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루에 5시간 가까이 오전, 오후에 걸쳐 학습 위주의 환경에 영유아를 두는 것은,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그림 16〉 유아대상영어학원–초등학교 수업시수 비교

시간	월	화	수	목	금
8:30	모닝케어 실시 및 자유 놀이 시간				
9:40	아침활동(합동 교육)				
9:55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10:30	휴식시간				
10:40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11:15	휴식시간				
11:25	Chinese	Chinese	Chinese	Chinese	Chinese
12:00	점심 식사				
13:00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13:35	휴식시간				
13:45	Chinese	English Activity	Chinese	Chinese	English Activity
14:20	귀가 준비				
14:30	귀가 및 DAYCARE 실시				

출처 : 다운진어학원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17〉 유아대상영어학원-초등학교 수업시수 비교

▪ 종일반 (8:00am – 7:00pm) ▪ 정규반 (9:30am – 3:30pm) ▪ 오후반 (2:30pm – 6:30pm)

Time	Class
8:00 – 8:50 AM	자유시간 및 개인간식
9:00 - 9:30 AM	Morning Exercise
9:30 - 10:00 AM	Storytelling time
10:00 - 10:20 AM	Roll call / Circle time
10:30 - 11:05 AM	Class 1
11:15 - 11:50 AM	Class 2
12:00 - 12:35 PM	Class 3
12:35 - 1:40 PM	Lunch time
1:40 - 2:15 PM	Class 4
2:25 - 3:00 PM	Class 5
3:00 - 3:35 PM	Snack time
3:45 - 4:20 PM	Class 6
4:30 - 5:05 PM	Class 7
5:15 - 5:50 PM	Class 8
6:00 - 6:20 PM	Sing a song
6:20 - 7:00 PM	하원 및 자유시간

정규반 및 오후반

- Phonics
- Conversations
- Mathematics
- Reading
- Song & Chant
- Art and Craft
- Theme Vocabulary
- Block (TipTop/CURIX)
- Story Book Art
- Physical Education
- 인성교육
- Quiz
- Cooking

+ Plus

종일반(시간연장반)

- 오르다(누리과정)
- 한글
- 수학
- 동요
- 창의영재
- 명화명작
- 색종이접기
- 역할놀이
- 뇌운동
- 신체놀이

출처 : ABC러닝센터 행당어학원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학습지를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이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학습지를 통한 국어교육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양미선 등(2014)의 보고서에서 영유아의 학습지 이용비율은 29.4%를 보이고 있다. 그 동기는 주로 초등학교 선행학습(50.7%)[30]로 나타났으며, 주된 과목은 한글(84.9%)[31]이다. 학습지에서 주목할 것은 '교사방문비율'이다. 교사방문비율은 학습지를 이용할 때 방문교사가 집으로 와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의 비율이 한글의 경우 97.2%에 이르고 있다. 교사의 방문은 진도 및 학습수준 점검, 학습목표 설정 등 다분히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아동의 자발적 학습

30) 이용동기는 다음 순으로 '자녀가 원해서(19.2%)', '학습지 바우처 지원(11.3%)', '우수 교육 프로그램(10%)', '남들이 다해서(4.6%)' 등으로 나타남

31) 한글 다음의 순위는 '수학(49.2%)', '영어(8.5%)', '사고력(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학습지를 이용한 한글 학습은 다분히 선행의 목적도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학습지 이용이유로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응답한 비율이 50.7%에 달했다. 이는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부모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토리 텔링 수학'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수학문제를 이야기형식으로 풀어서 제시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연령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국어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국어는 다른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교육업체의 홍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최현주(2015b)는 이와 관련하여 신학기 또는 입학철에 많은 기사가 한글읽기, 쓰기 등의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여성월간지의 경우, 전문가, 교사 등의 말을 인용해 취학 전 어느 정도의 학습기준을 제시하면서 부모의 불안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2. 초등학생 사교육 현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의 첫 번째 특징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교과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2015)[32]가 이를 뒷받침한다. 초등학생이 주로 받는 사교육과목으로 학년과 관계없이 영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학, 음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저학년은 영어와 음악, 고학년은 영어와 수학에 집중되어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과목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영유아때 시작한 영어 사교육이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 조사(2015)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총 사교육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과목이 영어(24,804억원)이고, 다음으로 수학(14,682억원), 체육(10,809억원), 음악(10,455억원)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원 조사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32) 한국 소비자원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실태와 지출비용에 대해 조사하여 2015년 2월에 발표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18〉 초등학생 사교육 과목비중(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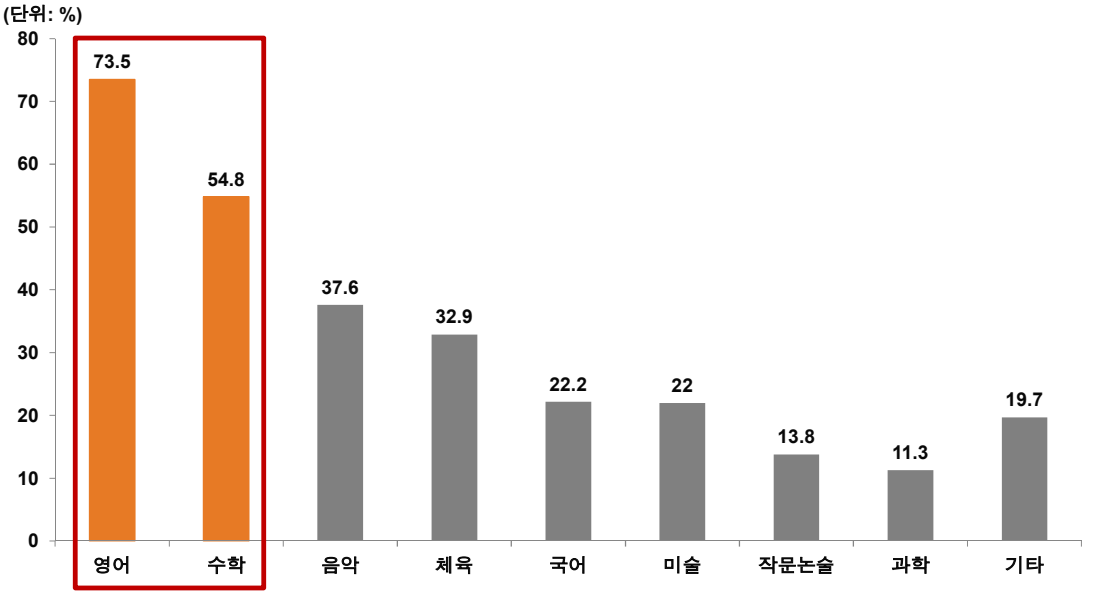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같은 교과과목 중심의 사교육목적이 학업성취향상과 선행학습에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때부터 입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조사(2015)에 의하면,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33]로 '심화학습을 위해서(49.8%)', '선행학습을 위해서(45.0%)'로 꼽고 있다. 입시경쟁에 있어서 앞서기 위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미리 배우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2014 사교육비조사(2015)의 자료도 이와 유사하다.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수강목적을 물었을 때 주된 응답이 학교수업 보충(37.9%), 선행학습(27.6%)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초등학생의 사교육 의사결정은 대부분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초등학생의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입시경쟁을 시작하고, 배우지 않아도 될 내용을 미리 배우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입시와 관련한 현황을 조금 더 짚어보자. 입시와 관련한 초등학생 대상 사교육의의 맨 꼭대기에는 영재교육이 있다. 2014년 현재 초등학생기준 영재교육 대상자는 총 64,427명[34]에 이른다. 이 학생들은 교육청과 대학에서 각기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또

33) 중복응답이 가능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는 초등학교내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의 교육과정은 정규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이런 점에서 제도화되어있는 영재교육 자체도 사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다-되며, 대상자 분포비율은 각각 약 24%(15,477명), 5.4%(3,466명), 70.6%(45,484명)이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35]의 약 2.4%에 해당한다. 이 수치만 보자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의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석하게도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 영재교육원의 경쟁률을 참고하여 추산해보도록 하자. 2013년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기준 경쟁률은 선발분야마다 다르지만, 4~12대1 수준을 보였다고한다[36]. 보수적으로 경쟁률을 4대1로 잡아 2014년에 적용한다면, 전국적으로 응시인원만 약 25만명에 육박[37]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가 맞는다면 전체의 9~10%에 이르는 초등학생이 영재교육을 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과열된 영재교육의 원인은 지필고사에 의존하는 선발 시스템,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지필고사에 의존하는 선발 시스템은 여전히 난이도가 높은 수학·과학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선행교육 금지법에 의해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을 벗어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쟁적 선발 체제는 진석언 등(2015)의 연구에서 영재교육 문제점으로도 지적되었고, 사교육 유발요인으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학부모는 영재학교에 가는 것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의 영재교육목표에서 한참 벗어나있는 잘못된 인식이다. 영재를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

3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영재교육 통계연보'내 수치를 재계산한 것이며, 각 영재교육기관별 초등학생 대상 선발 인원에 해당함
35) 2014년 초등학생 수는 2,728,509명임(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36) '대한민국 1% 영재 교육원', 매일경제(2013년 9월6일자) 기사에서는 수학·과학이 4~5대1, 음악·미술이 5~6대1, 문예창작 12대1 수준이라고 하였음
37) 영재교육 대상자 전체인원*4 수준으로 계산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고, 옆집 친구도 하고 있다는 '불안 마케팅'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영재교육에 대비한 사교육은 입시의 부담감이 이미 초등학교로까지 내려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초등학생 대상 사교육의 주된 특징은 아니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사교육이 있다[38]. 바로 '새벽반'이다. 2015년 새 학기부터 서울 등에서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지면서 등장한 사교육 형태다. 주로 서울 강남, 노원, 양천 구등 소위 '사교육 특구'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학원은 대부분 7시~7시30분에 수업을 시작해서 1시간정도 공부하고 등교시켜주는 형태이다. '등교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일부 보습학원에서 주요 과목을 가르치고, 일부 불법 개인과외업자가 새벽반을 개설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단속할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아이들의 잠자는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시작된 정책이 사교육으로 악용되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천석 소장(행복한아이연구소)도 '아침을 거르지 않게 하고자 시작했던 본채의 취지가 무색[39]'해지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하였다. 정책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이를 악용하는 사교육의 끈질기고도 간교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중학생 사교육 현실

입시는 그 자체로서 경쟁이긴 하지만, 이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바로 서열화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대학 서열화도 있지만, 고교서열화도 만만치 않다. 이 고교서열화는 바로 중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아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 서열화는 주로 특목고/자사고 vs. 일반고간 서열화를 의미한다. 적어도 서울에서는 이른바 '좋은 고등학교'로 인식되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에는 특목고 20개, 자사고 25개가 있다[40]. 특목

38) "9시등교' 풍선효과...사교육시장 '새벽반' 부활', 헤럴드 경제, 2015년3월3일자 기사
39) '9시등교 풍선효과...실태는?', tbs교통방송, 2015년 3월 26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40) 서울특별시 교육청(2014), '2014 간편한 서울교육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e-book.

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는 핵심동기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만큼 특목고나 자사고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학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교육의 핵심지역이라 부를 수 있는 서울의 '사교육 특구'에서 행해지는 일반적 현상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의 첫번째 특징은 수학의 중요성이 눈에 띠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입시에 대비하여 영어준비를 어느 정도 완료하는 시점임과 동시에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중학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2013년도 학원 현황 자료 중, 학교급별 영어·수학 교습과목 수의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영어는 초등학생 또는 영유아 단계의 비중이 매우 높게 시작하여 학령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지만, 수학은 중학교 급에서 역전되어 영어보다 더 많은 교습과목 수를 자랑한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욱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그림 19〉 학교급별 영어·수학 교습과목 수 변화(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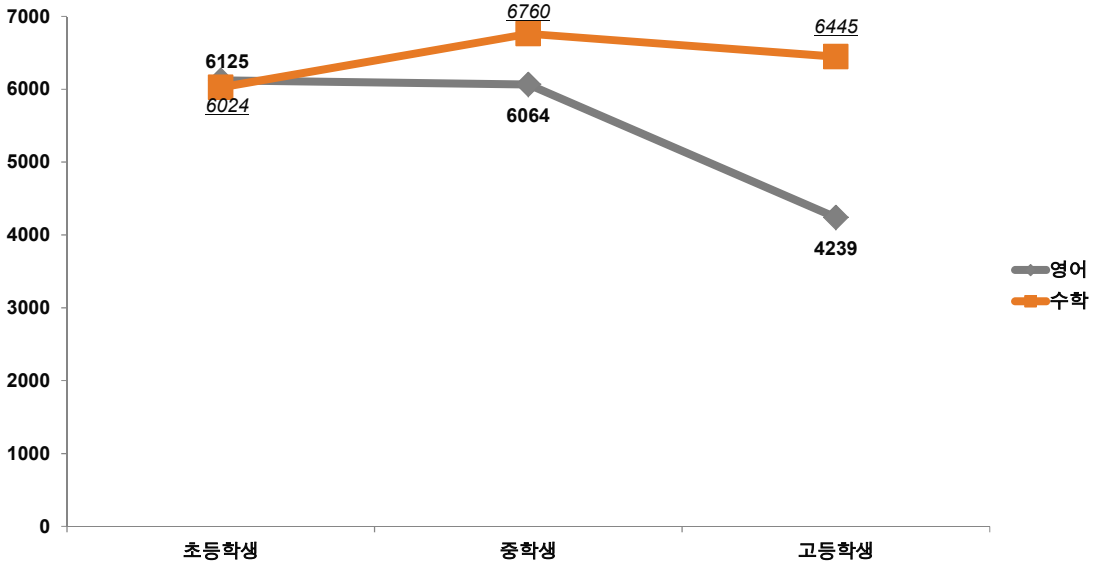

중학교 급에서 수학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고교입시가 아니라 대학입시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입시에서 수학이 매우 중요한 선별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학교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선행학습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보도자료(2014)에 따르면, 서울의 사교육과열지구[41] 13개 학원의 수학 선행정도가 평균 4.2년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2학년의 과정을 가르치는 셈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7년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대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과목(정수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림 20〉 사교육 과열지구 학원의 수학선행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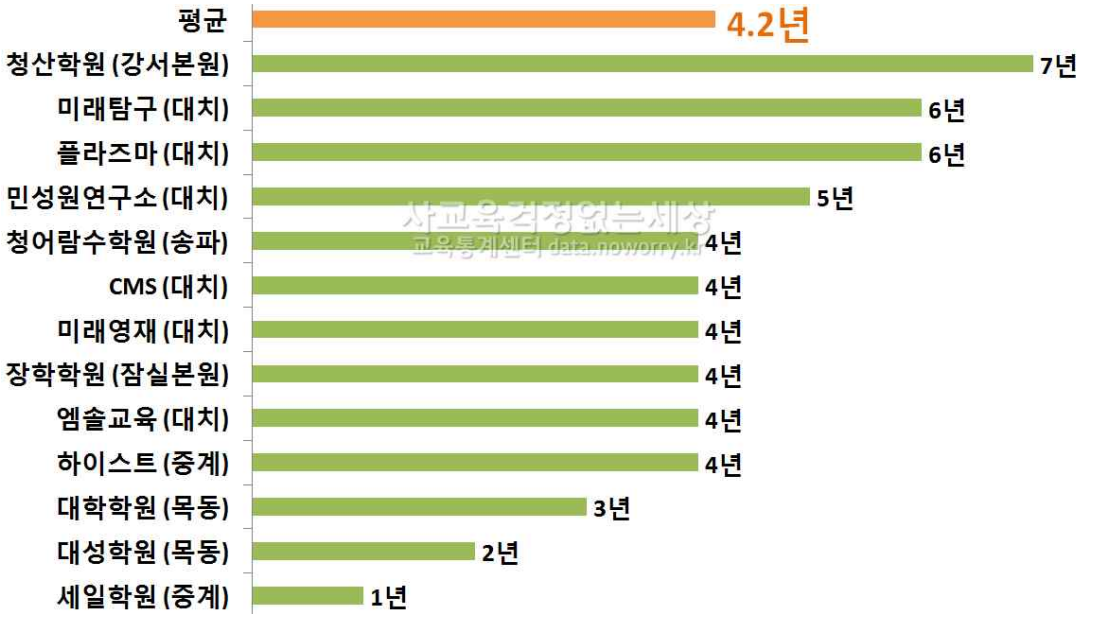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선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영어는 중학교 때 완성하고자 하는 부담도 있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대입을 위한 영어를 준비함으로써 고등학교 때 수학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하고, 대입영어를 마무리해야 하는 우리나라 중학생에게 놀이시간이란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41) 강서, 대치, 목동, 송파, 중계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두 번째 특징으로 내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교과(사실상 국영수사과)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교 입시, 그중에서도 특목고 입시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교서열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꼭 고교입시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신 상위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사교육까지 더한다면, 상당수의 중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의원 유기홍 의원실의 공동조사(2013)[42]에 따르면, 중학생 조사대상의 74.2%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교육과열지구 학생은 84.6%, 그 외 지역은 62.9%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43]. 통계청 2014 사교육비 조사(2015)에서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1%로 조사되었다. 2014년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중학생 수는 1,717,91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1,187,076명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하면 1,274,689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약 120만 명의 중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 사교육참여 중학생 및 내신 사교육 참여 중학생 수 추산(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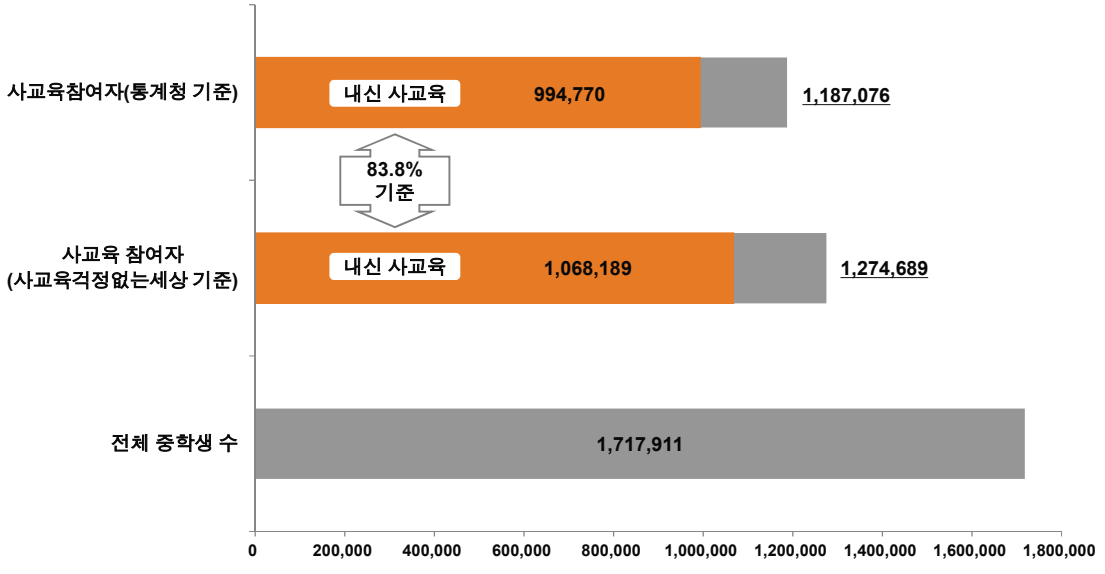

42) 서울, 경기지역 38개 중학생 2,273명, 고1대상 80개 고등학교 2,769명, 일반고 교사 50개 고등학교 1,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

43) 사교육과열지구로 '서울 강남·송파, 양천, 노원, 경기 안양·평촌, 성남 분당, 고양 일산'을, 비교군 일반지역을 '서울 구로, 금천, 강북, 경기 읍면 단위'를 대상으로 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내신 사교육과 관련하여 연합뉴스가 보도한 윤선생의 조사자료(2014)를 보면 내신을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44]. 중간고사에 대비해 사교육을 주로 활용하거나 비슷하게 활용하는 비율의 합계가 83.8%로 대부분의 중학생이 내신을 위해 사교육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추산하면 약 120만 명 중 100만명 정도가 내신을 위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학부모의 57.2%가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내신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부모의 인식은 중학생의 사교육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림 22〉 중간고사에 대비한 사교육활용정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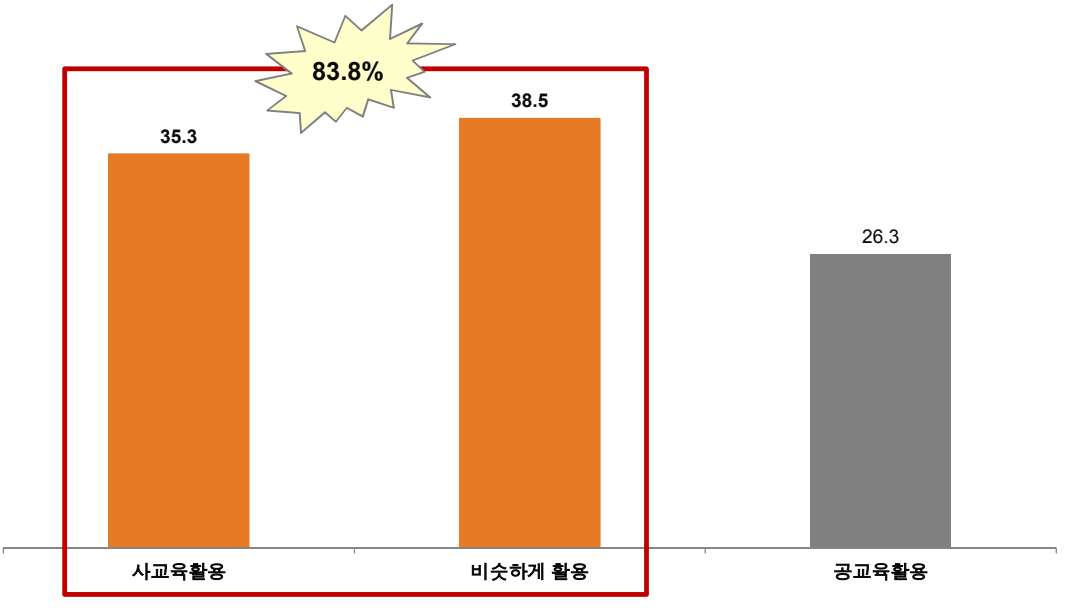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 치열한 고교 입학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스펙 사교육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수업이외에 추가활동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또는 면접 시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 꺼리'를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하는 학원정보에 따르면, 2013년도에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기타과목에서 가장 많은 교습과목 수를 보인 과목은 논술이었다. 다음으로 영어자격증, 기

44) '中학부모 학교시험 준비하는데 사교육이 더 도움', 연합뉴스, 2014년 10월13일자 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타외국어, 한문 등으로 나타났다. 영어자격증은 NEAT, 토익, 텝스, 토플 등이고, 기타외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등이다. 중학생이 왜 이런 자격증을 필요로 할까? 학교에서는 요구하지도 않는 것들인데 말이다.

〈그림 23〉 2013년도 중학생 대상 기타 교습과목 수(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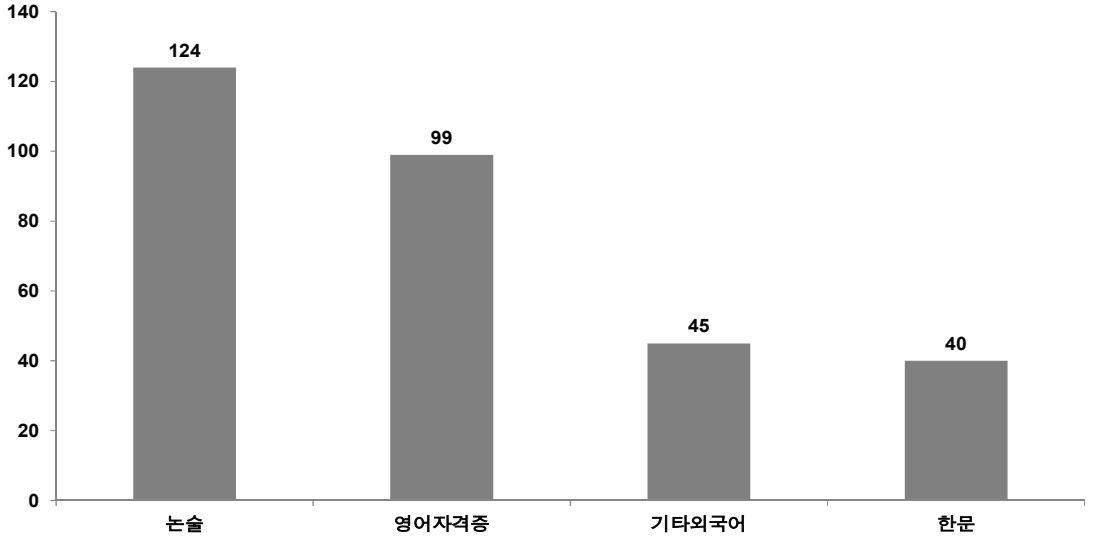

4. 고등학생 사교육 현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대학입시'이다. 대학입시에 성공하느냐, 즉 얼마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느냐가 성공한 교육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가 인생을 가른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고등학생의 첫 번째 사교육의 특징은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주요 사교육 유형인 학원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올해 강남의 한 학원의 고3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시간표인데, 크게 정시와 수시를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정시는 주로 주요 교과과목을 중심으로 한 수능대비 프로그램이다. 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시는 논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수시는 전형이 대학별로 매우 많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계열에 따라 대비반이 달라진다. 이를 학원 시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시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경우,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위한 별도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 역시 계역별로 작성 요령을 특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학원의 프로그램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 몰려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방학 중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입시에 시달리고 있다.

〈그림 24〉 강남 모 학원의 고3 대상 강좌 시간표

고3 시간표

과 목	강 좌 명	담 당	요 일	시 간	개 강	강좌특징
국어	국어A		토요일	9:30-12:30	계속반	EBS 연계교재 집중정리+실전모의고사
	국어B		일요일	7-10	계속반	
	국어B		일요일	2-5	계속반	수능1등급올리기(대상3-4등급)
	수능수업+내신					클리닉 수업
						수시강좌
영어	수능만점반		일요일	2-5	계속반	ebs 교재 +자체심화교재
	수능만점반		일요일	9:30-12:30	계속반	EBS와 연계한 수능만점강의
수학	수능만점반 A반		토요일	9-1	계속반	마감
	수능만점반 A반		수요일	5:30-9:30	계속반	주2회반 (소수정예반)
			토요일	7-10		
	수능만점반 B반		화요일	6-10	계속반	마감
	수능만점반 B반		일요일	9-12	계속반	마감
	수능만점반 B반		토요일	1-5	계속반	대성학원 기백 마감강사
						수시강좌
사회	사회문화		일요일	3-6:30	7/19	테마별 심화개년+EBS변형문제+기출문항실전표풀이
	한국지리		목요일	1:30-5	7/16	단원별핵심정리+실전문제풀이
	법과정치		일요일	2-5:30	7/12	팀수업
제2 외국어	베트남어 실전반		일요일	9:30-12:30	7/19	9월모평대비실전반-6회특강-
	베트남어 시작반		화/목	9-1	7/21	8회특강, 베트남어 시작반
	스페인어		상담실 문의			대원팀수업
						수시강좌

ⓒ 해당학원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25〉 강남 모 학원의 고3 자소서 프로그램

자소서 프로그램

강좌	일시	회차		특징	개강일
서울대 자소서 특강	토 10:00~12:00	1회		서울대 양식에 맞춘 작성요령	7/11(토)
의대 자소서 특강	토 15:00~17:00	1회		의학계열 지원자를 위한 작성요령	7/11(토)
국제 자소서 특강	토 19:30~22:00	1회		국제계열 지원자를 위한 작성요령	7/11(토)
자소서 초고 끝내기 특강A	금 19:00~22:00	1회		공통문항별 컨셉 잡기 및 초고완성	7/10(금)
자소서 초고 끝내기 특강B	금 19:00~22:00	1회		공통문항별 컨셉 잡기 및 초고완성	7/17(금)
자소서 원스탑 특강	월 18:30~21:30	3회		서울대 및 의학계열 자소서 완성 (10명 마감, 1회차 공통강의, 2,3회차 개별필수)	7/20(월)
1:1 자소서 클리닉	개별 일정	3회 표준		1회 : 문항별 컨셉 잡기 2회 : 초고 수정 3회 : 최종본 완성	개별

ⓒ 해당학원 홈페이지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자. 통계청 2014 사교육비 조사(2015)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중 49.5%가, 대도시의 고등학생 중 55.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45]적으로 910,489명, 대도시[46] 학생은 436,807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6〉 전체 고등학생 사교육참여 학생 현황(2014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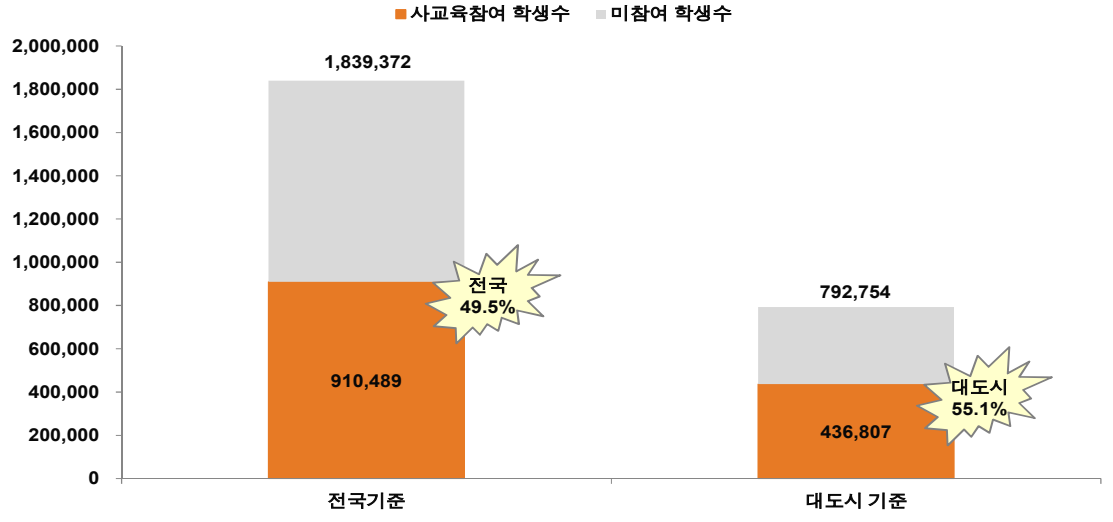

45)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수는 1,839,372명임(2014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 통계편(2014))
46) 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이며, 해당지역의 고등학생 수는 792,754명임(2014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 통계편(20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일반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도 주목할 현상이다. 이는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특목고 등은 상대적으로 일반고보다 입시에서 유리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2014 사교육비조사(2015) 결과 일반고 전체 학생의 56.2%가, 대도시 지역의 경우 62.7%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 전체 참여율 보다 6.7%p, 전체 대도시 학생 참여율보다 6.6%p 더 높은 수치이다. 2014년 일반고 학생수[47] 기준으로는 전국 기준으로 738,509명, 대도시 기준으로 331,134명의 일반고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그림 27〉 일반고 고등학생 사교육참여 학생 현황(2014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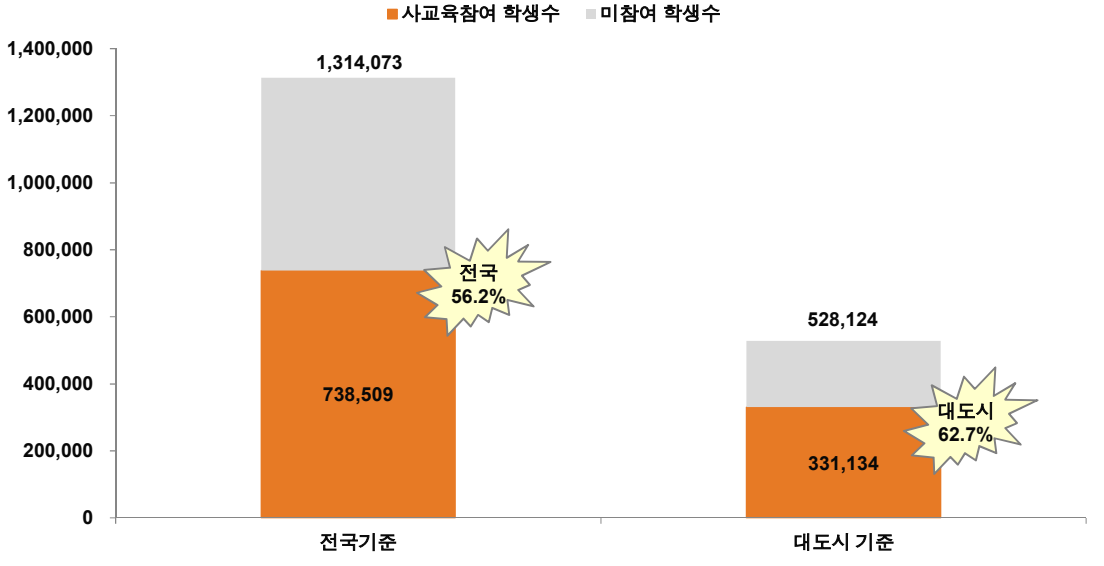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그림 26〉, 〈그림 27〉을 보면, 공통적으로 대도시의 사교육 참여율이 약 6%p 정도 높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만일 대도시와 동일한 조건이라면(학원 수, 소득수준 등) 이들 지역의 사교육참여율도 올라갈 것이며, 전체

47) 일반고 학생은 전국적으로 1,314,073명이고, 이 중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일반고 고등학생은 528,124명임(2014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 통계편(20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교육참여율 또한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전국을 기준으로 사교육참여율을 낮추는 곳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인데, 이들의 낮은 참여율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이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특징 두 번째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후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보충 또는 자율학습 등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사교육참여율이 초,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특징이다.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것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여전히 고등학생들이 입시라는 경쟁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부 자료[48]를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74.7%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프로그램 개수는 167,333 이며, 그 중 수학이 33,876개로 가장 많고, 영어가 33,296개, 국어가 30,015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3개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8.1%에 달하고 있다. 그 외 사회(21,650)와 과학(21,344)을 더하면 83.8%로 수능 주요과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2014 사교육비 조사(2015)를 토대로 방과 후 학교 참여학생 수를 추정해보도록 하자. 2014년 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참여비율은 전체 고등학생의 70.1%(1,289,400명), 일반고 고등학생의 73.1%(960,587명)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중 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학생의 58.3%(1,072,354명), 일반고 학생의 66.8%(877,800명)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전체 고등학생 기준 83.2%, 일반고 고등학생 기준 91.4%에 이르는 수준이다.[49]

48) 교육부(2014), 2014년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그림 28〉 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 참여현황(2014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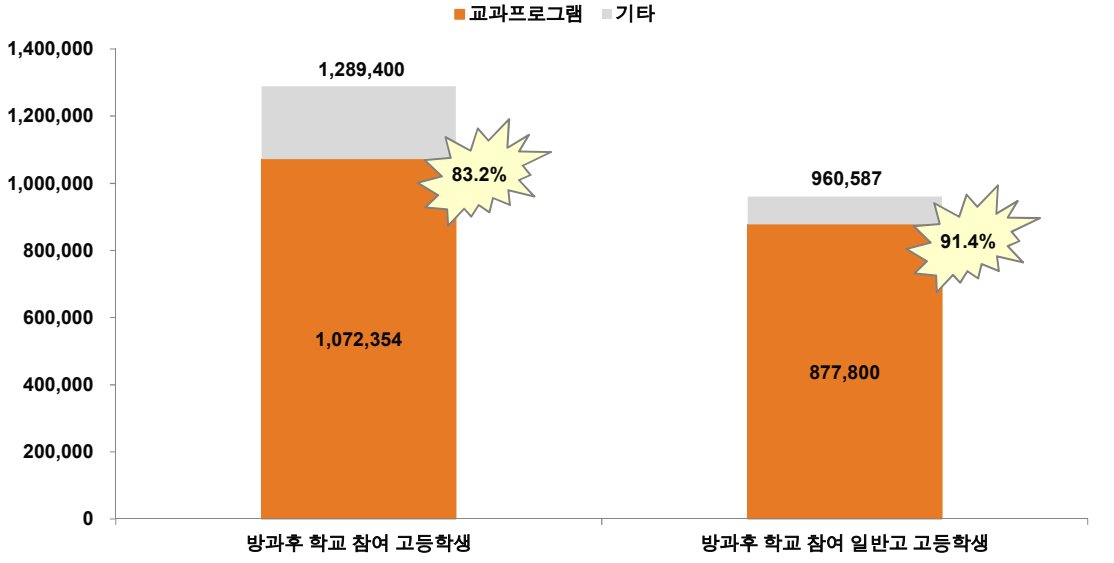

이처럼 방과 후 학교, 그 중에서도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진로보다는 진학에 중점을 둔 활동들이 지배적이라는 반증이다. 진학대학을 결정하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학원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필연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늦은 시간의 학원 교습이 학생들의 수면부족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학원법 제16조 제2항[50]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학원의 운영시간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다르다. 〈표 3〉에 보면 각

49) 앞서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서는 고등학생 74.7%, 약 137만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8만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본고에서의 추산보다는 더 많은 수의 학생이 교과중심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50)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시도별 학원운영시간 규제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제한시간이 밤 10시인 곳이 서울시, 대구, 광주, 세종 등 4곳이다. 밤 11시인 곳은 부산, 인천, 전북 등 3곳이며, 밤 11시 50분인 곳이 전남으로 1곳이 있다. 나머지 9곳은 자정으로 되어 있다. 규제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빨라봐야 밤 10시이다. 이 시간에 학원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집에가서 바로 자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또 해야 한다. 신학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 일반계고 학생들 중 42.19%가 사교육숙제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강남지역의 학생들은 71.63%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51].

〈표 3〉 전국 시도별 학원운영시간 관련 조례[52]

	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특별시	05:00~22:00		
부산광역시	05:00~22:00		05:00~23:00
대구광역시	05:00~22:00		
인천광역시	05:00~21:00	05:00~22:00	05:00~23:00
광주광역시	05:00~22:00		
대전광역시	05:00~22:00	05:00~23:00	05:00~24:00
울산광역시	05:00~24:00		
세종특별자치시	05:00~21:00	05:00~22:00	
경기도	05:00~22:00		
강원도	05:00~22:00	05:00~23:00	05:00~24:00
충청북도	05:00~23:00		05:00~24:00
충청남도	05:00~21:00	05:00~23:00	05:00~24:00
전라북도	05:00~21:00	05:00~22:00	05:00~23:00
전라남도	05:00~22:00		05:00~23:50
경상북도	05:00~21:00	05:00~23:00	05:00~24:00
경상남도	05:00~21:00	05:00~23:00	05:00~24:00
제주특별자치도	05:00~21:00	05:00~23:00	05:00~24:00

51) '신학용 "고등학생 사교육 숙제 부담 커"', 뉴스1, 2013년 10월 24일자 기사
52) 각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중 교습시간을 발췌 정리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설상가상으로 학원들은 이 규제마저도 피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2014년 발표[53]에 따르면 교습시간을 위반한 106곳의 학원을 적발하였다고 하였다[54]. 이중 경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5건에 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 참여율이 서울이 1위(61.3%), 경기가 3위(53.5%)였다. 2위는 대구였는데, 학원시간 연장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13년도에 대구 학원연합회 측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10시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55]. 또한 2015년 4월에는 조홍철 대구시의원이 고등학생의 경우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56]. 이런 시도는 근본적으로 학원교습시간 기준이 시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더욱 극적인 사례도 있다. 부산의 모 재수학원이 강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문을 잠그는 '쇠사슬반'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와 잠깐의 휴식 외에는 강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학습시간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기사[57]에 따르면 해당학원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하여 휴대전화도 검사하였다고 한다. 입시 성과를 위해서라면 아동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이다. 이런 학원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특히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53) 교육부 보도자료, '17개 시도 소재 학원 19,921곳 점검, 1559건 적발', 2014.09.25
54) 추가로 심야 불법영업 단속건수는 2013년 6월에는 167건, 2013년 9월에도 111건 등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이들 학원이 모두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입시학원인 경우가 많아 고등학생의 심야 불법 교습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55) "'교습시간 밤10시 규제 완화해야' 대구학원연합회 조례개정 요구', 대구일보, 2013년 1월 30일자 기사
56) 다행히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음('대구 '학원 교습시간 연장' 없던 일로', 한겨레, 2015년 4월 29일자 기사
57) '대학입시가 뭐기에...'쇠사슬반'까지 등장',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5일자 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그림 29〉 쇠사슬반 모집안내

ⓒ오마이뉴스 캡처

5. 아동의 행복지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지금의 희생과 노력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현실 때문에 행복해 하지 않고, 오히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체적인 조사를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봉주·유민상(2015)의 연구[58]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결정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구분하고, 학습을 '약한 요인', 선택의 자유와 자기 자신을 '강한 요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분류하였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아동이 가장 낮은 주관적 행복을 보이는 이유로 상기의 요인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염유식 등(2014)의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결과보고서[59]'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상승하다 지난해에 하락하였다. 그러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성적에 따른 격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87.2%) 〉 중학생(78.8%) 〉 고등학생(73.1%), 성적의 경우 상위집단(89.0%) 〉 중간집단(78.6%) 〉 하위집단(57.0%)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행복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등이며, 성적이 좋을 때 행복하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하였다. 반면, 행복하지 않을 때는 '성적에 대한 압박',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 등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해보면, 학생의 주관적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하고 싶은 일', '원만한 친구관계'이며,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학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학업(성적)은 학생의 행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봉주·유민상(2015)의 연구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0〉 행복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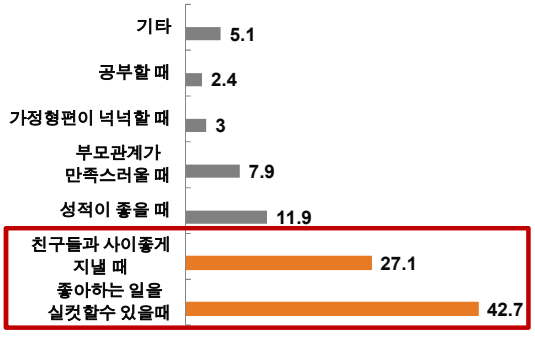

〈그림 31〉 행복하지 않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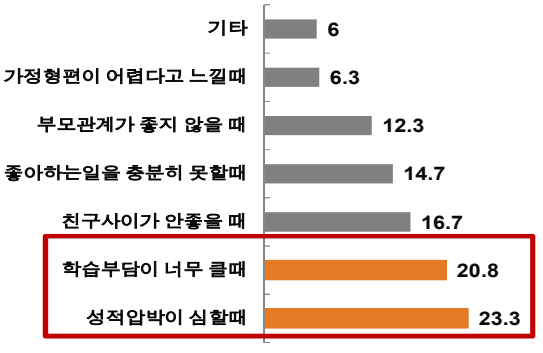

58) 만 우리나라, 독일, 영국, 알제리 폴란드, 터키 등 15개국의 8세, 10세, 12세 아동 52,1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등을 비교·분석한 연구임

59)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2014년 3월~4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6,9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6%로 가장 낮은 순위[60]를 기록했다(OECD평균=85.77%).

이외에도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OECD 기준 삶의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60.3%[61]로 30개 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바로 위에 있는 국가는 루마니아인데 76.6%로 16.3%p 차이가 나 우리나라는 독보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한 조사를 좀 더 살펴보자. 우선 사회조사보고서(통계청, 2014)에 따르면, 13-18세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으로 공부(52.6%)가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외보(13.1%)로 나타나 학업에 대한 고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숙제나 시험(2.47점/4점), 성적(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2.3점/4점)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경준(2015)의 연구에서도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7.2%가 학업문제를, 50.5%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중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진학률[62]을 고려하면 다분히 진학과 관련한 고민으로 볼 수 있어 학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이 올라갈 수 록, 대학진학을 목표로 할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63]되었다.

60)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수치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국가 평균을 100으로 하여 각 국가의 점수를 환산한 것이며,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 호주, 일본의 수치는 제시되지 않음

61) 11세, 13세,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6점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임

62) 2014년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70.9%임

63)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비중: 초등학생-43.1%, 중학생-70.2%, 특성화고 학생-66.5%, 일반/특목/자율고 학생-86.6%로 조사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32〉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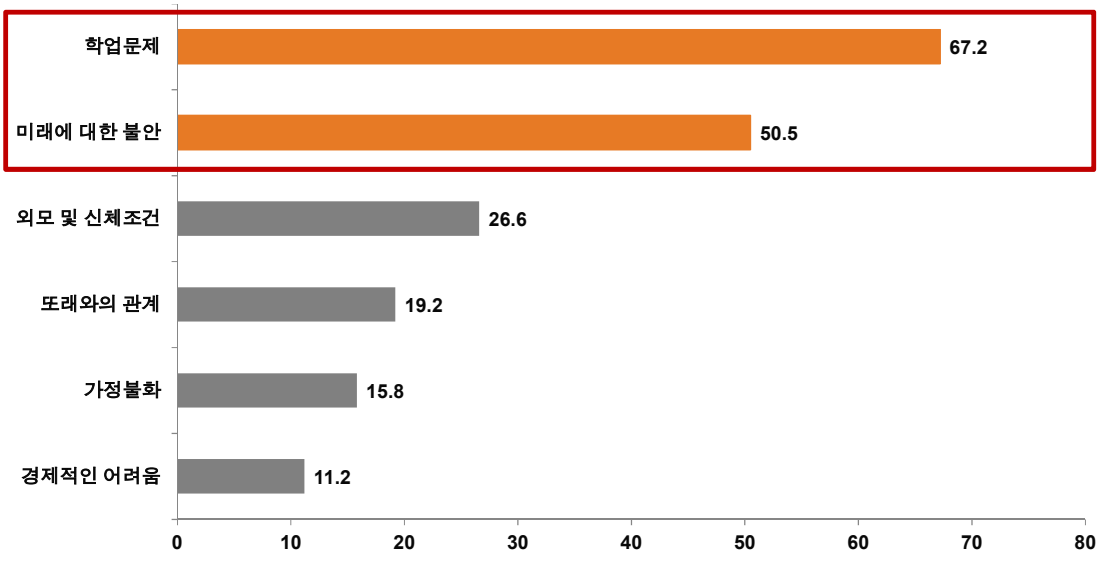

또한, 김경준(2015)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스트레스 유형과 관계없이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같은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죽고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죽고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2.7%가 '학업성적(42.7%)'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33〉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아동 중 원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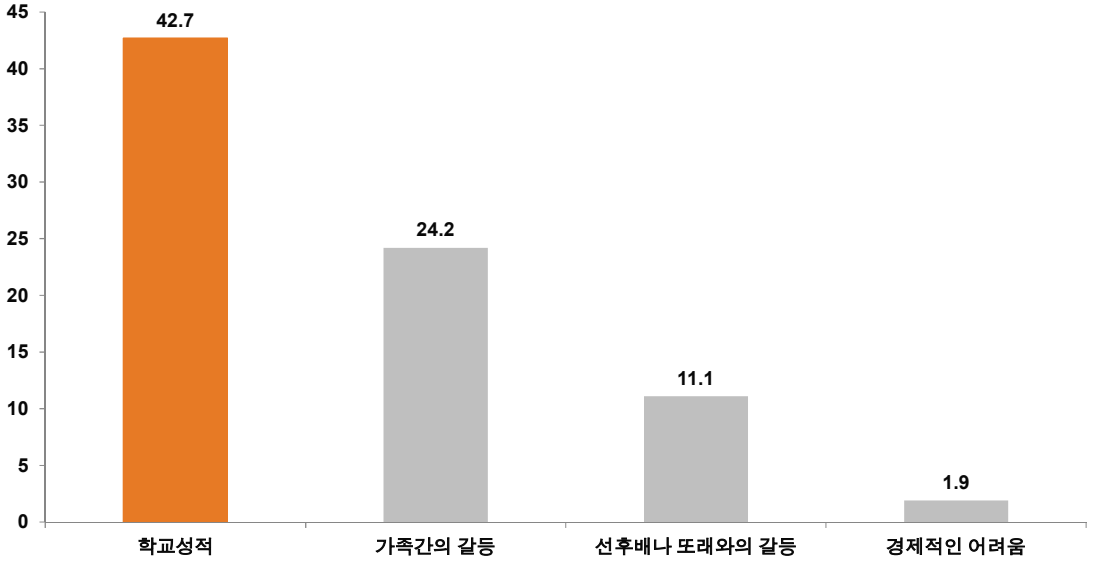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은 자신이 하고싶은 일은 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학습에 할애하고 있다. 이른바 '학업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학업노동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은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등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주범은 사교육이다. 이렇게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 아니면 그저 목적도 없이 휩쓸리는 광풍인가? 그 원인을 진단해 보자.

Ⅳ. 무엇이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사교육의 원인을 크게 구조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구조적 측면은 학부모나 학생의 사교육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공교육 체제 내에서도 구조적 문제나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심리적 측면은 앞서 형성된 동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굳이 사교육을 받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사교육을 받는 다거나, 하나만 받아도 될 사교육을 2개 이상을 받는다는 식이다.

〈그림 34〉 사교육 유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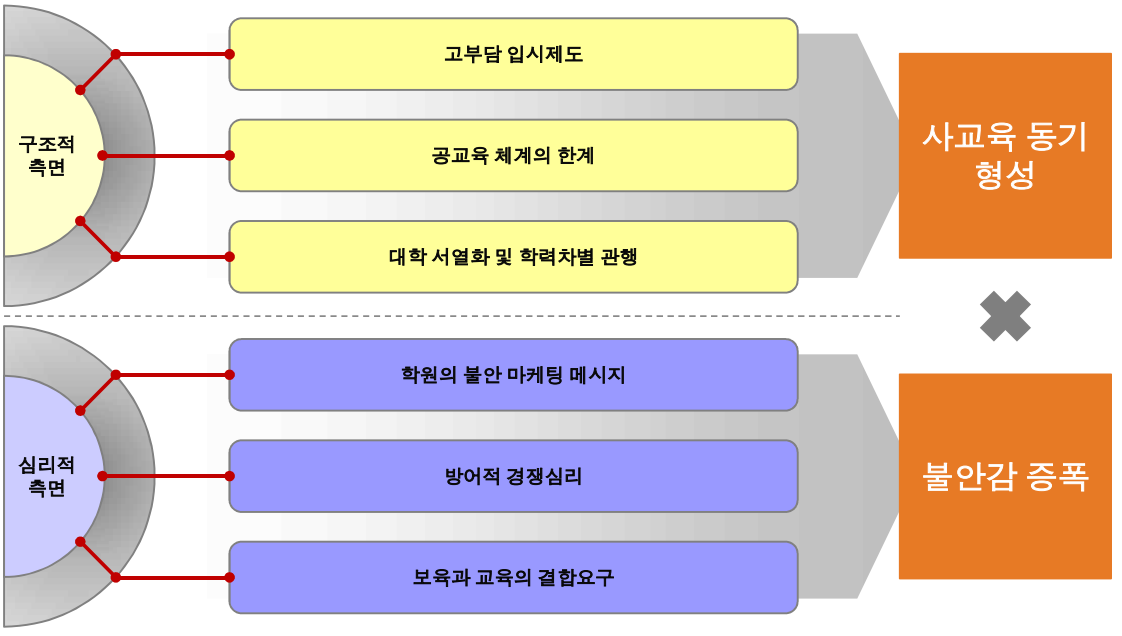

1. 구조적 측면

구조적 측면은 교육제도와 관련한 원인으로 첫째 '고부담 입시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대학입시는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입시 자체가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시는 너무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고부담을 유발하는 첫 번째 요소는 매우 복잡한 대학입시이다. 대입전형은 학생부, 내신, 논술, 수능성적 등 매우 다양한 평가요소를 포함하며, 각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이 평가요소들을 매우 다양하게 조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적성이 아니라 성적에 맞춘 진로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3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대학입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고부담을 유발하는 두 번째 요소는 지나치게 많은 시험범위이다. 대표적으로 수능 수학 시험범위는 3학년 2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수능시험은 11월에 치러지고 있다.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EBS 연계 정책으로 인해 EBS 교재도 풀어야 한다. 특히 수능은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도 활용되어 그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학교공부만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없다. 자연히 사교육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림 35〉 수능수학 시험범위와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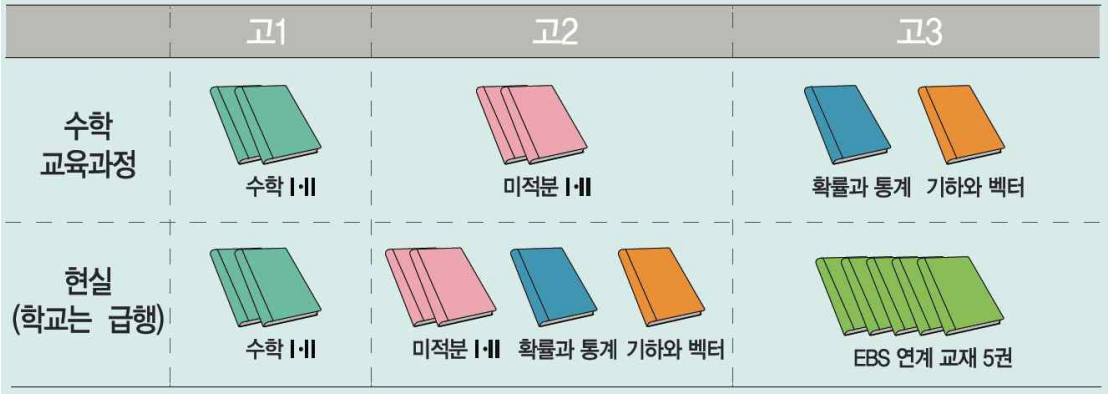

두 번째 원인으로 공교육체계의 한계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체계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기사[64]에서는 교육평론가인 이범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비효율과 무책임이 대치동 학원가를 일으켜 세운 토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중백 교수는 대치동 학원가는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한 갈증을 해소해줬기에 주목을 받았으며, 입시정책의 초점을 사교육억제에 맞추기보다 공교육 수준향상에 주력한다면 대치동 학원가는 자연스레 해체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2014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기본 방향이 공교육 정상화이다. 역설적이게도 교육부는 이 대책으로 현재 공교육체계에 많은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 참여 동기로 '학교 보충수업'을 꼽고 있다.

64)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은 어디로 가나, 중앙일보, 2015년 6월 24일자 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그림 36〉 사교육 수강목적

(단위 : %)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	보육 및 기타
2007	33.6	36.4	58.6	52.0	8.9
2008	32.0	33.1	59.9	52.3	6.0
2009	28.4	23.3	49.2	72.3	6.4
2010	29.5	25.0	48.4	75.1	8.6
2011	29.7	23.7	52.1	77.6	9.6
2012	25.1	18.9	42.5	73.0	9.5
2013	23.6	17.7	41.2	72.4	8.5

※ 항목설명 : ①진학준비(국제중, 특목고, 대입(논술·수능) 준비), ②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니까 등), ③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학교수업보충(성적향상, 내신관리 등)

사교육걱정하는세상
교육통계센터 data.noworry.kr

이 같은 공교육의 한계는 입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렇다. 입시는 유형이 다양-대학별로 전형 개수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한다-하고, 학생개인의 역량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 대학입시를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해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교사 수에 비해 학생이 많다. 학생을 명문대에 보내는 것을 지상과제로 잡고 있는 학부모가 보기에는 학교에서의 입시 준비와 진학지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제도적 원인으로 대학서열화와 학력차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일렬로 서열화 되어 있으며, 대학 사이의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간 차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는 선발경쟁에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반면, 선발된 학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미국대학은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면 다 졸업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소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가야 한다는 문화적 합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전공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그것도 자신이 받은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교육의식조사(2013)에서도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4〉 학부모 사교육 증가 원인

순위	내용	점수(5점 만점)
1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4.1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4.1
3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4.0

2. 심리적 측면

다음으로 심리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불안감'을 꼽을 수 있다. 이 불안감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이 학부모의 불안감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 학원의 홍보내용이나 전략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불안감 조장요인은 바로 학원의 마케팅이다. 정확히는 학원이 홍보하는 메시지이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다. 학원은 학부모보다 전문적으로 입시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는 이 정보에 약하다. 입시와 관련한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설령 정보를 얻는다 해도 이른바 '입시 전략'을 짜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경험이 중요한 요소인데, 학부모는 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홍보 메시지를 짜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점을 교육부도 인식하고 있는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2014)'에도 사교육 증가원인으로 사교육업체의 불안마케팅을 꼽고 있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선행학습이다. 대학에 가기 위해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끝내야 되고, 고1까지는 수학을 끝내야 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학원이 주최하는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이런 선행과 관련한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다. '돼지엄마'도 있다. 학부모 가운데 사교육정보에 능통하고 실제로 자녀들 성적이 좋고 명문대학에 입학시킨 '실력'을 가진 엄마들이 주변 엄마들을 몰고 다닌다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돼지 엄마'는 처음에는 주변 엄마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면, 학원에서 모셔가거나 본인이 직접 학원을 차리는 경우도 있다고한다[65].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낸 경험을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불안감 자극요소는 방어적 경쟁심리이다. 이것은 앞서기 위한 경쟁이 아닌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다. 옆집의 아이가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도 학원에 보내는 것이다. 특별히 효과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검증없이 단순히 주변에서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경우이다. 이를 마케팅에서는 'Bandwagon Effect'라고 한다. 단순히 어떤 상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품을 덩달아 소비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인데, 방어적 경쟁심리로 나타나는 사교육 소비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소위 사교육 과열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원인중의 하나도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을 보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싼 임대료와 생활비를 각오하고 강남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학부모도 많다. 강남에 가면 사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 효과는 그 다음 문제이다. 이외에도 밤늦게 학원에 보내는 것도 바로 이런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보다 더 공부하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즉 한명이라도 암묵적 룰을 깨고 치고 나가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바로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원은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수요에 사교육을 결합하는 것도 심리적인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아무런 목적없이 자유롭게 노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아이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맞벌이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내 아이만 안할 수는 없다는 심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심리는 앞서 제시한 다른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어린 나이의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보육

65) "'정보가 곧 실력'...사교육 시장 흔드는 1등엄마 마케팅', YTN, 2015년 7월 9일자 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측면이 전면에 내세워진 것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결국 처음에는 보육의 목적으로 시작한 위탁에 점점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더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다른 아이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나누게 된다. 이를 통해 아이가 건강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를 맺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하루일과가 너무 촘촘하다. 그 중심에 특별활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기자회견문[66]을 보자. 회견문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이 예체능 체험활동보다 인지교육성향이 강한 영어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교육업체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장에 진출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육기관의 특별활동은 어머니로서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다. 물론 법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모가 거절하지 못하는 특별활동에서 아이들은 연령에도 맞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실컷, 그것도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실현가능하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고민해보도록 하자.

Ⅴ. 대안은 무엇인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5년 5월 13일에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67]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66)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단체 연대 토론회·기자회견 결과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년 12월 17일자 보도자료

67)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부처 단독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기획했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도 아동과 관련한 정책이 범 정부차원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본계획 안에 아동의 놀 권리가 일부 담겨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한 그간의 정책에 대한 정부인식을 살펴보자. 정부는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이념이 국내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사회적 인식 수준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아동기의 성장·발달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평가하고 있고, 문화·여가에 관해서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놀 권리 신장을 위한 계획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헌장 제정을 통해 관련기관(정부,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NGO 등)의 적극적 협업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제1차 아동놀이정책을 수립(2016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놀이시간 확보, 놀이공간 제공, 놀이개발 및 보급, 놀이지도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여가 기반조성을 마지막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놀이정책의 내용으로 놀이시간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다. 물론, 향후 제정될 관련 정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겠지만, 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사례를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제시된 사례는 대전과 서울의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쉬는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놀이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에서의 하루 100분 놀이시간 확보를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1교시 시작 전 1-20분, 수업사이 쉬는시간 2-30분, 점심시간 2-30분, 방과 후 20분 등 자투리 시간을 합한 시간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중 '놀 권리'와 관련한 부문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놀 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05.13,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놀이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놀이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과 놀이시간 확보를 위한 대안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본 발제의 서두에서 지적한 문헌연구의 한계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차후 정책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보다 앞서 지난 5월 4일에 전국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헌장'[68]을 선포하였다. 이와 동시에 관련한 10대 공동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선언은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다분히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구체적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아동의 놀 권리, 특히 놀이시간 확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안은 놀이시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 제시된 원인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놀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1. '놀 권리'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불안감을 조장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우선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법개정과 초중등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법개정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주체인 학원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선은 학원에

68) 어린이 놀이헌장은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어린이가 놀이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약속을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다. 크게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으로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놀이시간 보장, 수업전 방과 후 시간의 학생들 놀이시간 확보 및 여건 조성, 학교운동장을 놀이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학교 내·외 놀이 공간 마련, 학교 내·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과 후) 교육과정에 다양한 놀이 소재와 프로그램 제공, 학생 교내 행사(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놀이프로그램 운영, 돌봄 시간 놀이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놀이 교육 실시, 놀이 관련 연수 개설 및 놀이 동아리와 연구회 적극 지원, 가정 및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의 필요성 홍보 강화를 내세웠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15.05.04 전국 시도교육감,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어린이들의 놀 권리,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대한 대안적 개념임과 동시에 아동의 놀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교육의 실천적 의지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학원의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학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핵심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이다. 돈을 벌기위해서 이들은 정보의 비대칭적 구조, 부정확한 정보, 강사의 화려한 이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부모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학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바로 법개정이다. 앞서 제시한 원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개정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발제문 본문에서는 개정 취지와 주요내을 제시하고 부록에 구체적인 개정 법문 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원법 개정이다. 학원법 중에서도 학원의 교습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영업시간규제를 위한 대안은 크게 교습시간규제와 휴무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교습시간과 관련하여 현행 학원법은 구체적인 학원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각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학원운영시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표 3 참조). 올해 4월 대구에서는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 시간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한 규정은 본래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제를 통해 아이들의 수면권, 여가권, 놀 권리를 최소한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학교급이나 연령별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는 9:00부터 19:00까지 초등학교 재학생은 9:00부터 20:00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9:00부터 21:00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9:00부터 22:00까지로 개정을 해야 한다. 영업시작시간은 기존에는 전국적으로 5:00로 되어있던 것을 9:00로 늦추어야 한다. 그래야 이른 새벽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습행위를 막을 수 있다. 가장 늦은 시간까지 허용되는 고등학생 대상 영업시간의 경우에도 10:00로 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아동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취지이다.

나아가 학업부담으로 인해 시간 활용을 심각하게 제약받는 청소년들의 여가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심야 시간 학원 규제뿐만 아니라 최소한 일요일이라도 학원 휴강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살피면 학생 65%(401명)가 주말에도 학원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69]. 고등학생은 225명 중 169명(75%)이, 중학생은 325명 중 221명(68%)이 주말에 학원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요일마저도 여가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요일을 학원의 의무 휴강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이외에 선택적,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이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인지학습(국영수)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 특별활동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도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70] 질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육기관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의 교습 내용을 예체능 위주의 활동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돌봄 기능과 아동의 놀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69)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청소년에 쉼이 있는 교육을', 국민일보, 2014년 8월 1일자 기사

70) 미국 북플로리다대는 유치원에서 주입식·학생주도(놀이)식·절충식 수업을 각각 받은 원아 343명을 수년간 추적했다. 초등학교 3~4년생이 된 이들의 성적을 비교하니, 놀이를 통해 배운 학생의 점수가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의 점수보다 훨씬 높았다. 어릴 때 지나치게 학구적인 방식으로 배운 아이는 평균적인 아이보다 빠른 학습 경험을 한 반작용으로 두뇌 발달이 오히려 저해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콘 과학 칼럼니스트, [The New York Times]; '최고의 조기교육은 놀이다', 중앙일보 2015년 5월 26일자 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세 번째로 선행교육규제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선행교육은 학생의 발달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학교 수업의 원활한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도한 학원 선행교육을 규제하여 불필요한 학원 수강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이 개인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원에서 학교별로 공시하는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또한 모국어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적, 질적으로 과도한 외국어 선행 사교육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교육규제법에 미취학아동 및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과를 학습하려는 초등학생의 선행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해당 교과가 최초로 개설된 학년의 수업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단, 겨울방학의 경우 다음 학년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것은 예습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원에서 새 학기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한다.

2. 학업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법률개정을 통한 현상억제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능의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수능은 응시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워 변별력을 극대화시키는 구조이다. 학생 개인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 간의 경쟁의 양상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철, 김희삼(2012)의 연구는 상당히 의미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시시험이 입학자원에 대한 고도의 변별력(매우 촘촘한 서열)을 대입과정에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각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평균입시성적(수능점수)에 따라 대학 간 촘촘한 서열질서가 생성되고 이에 따라 학력차별 기제가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의 변별력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주효한 방법으로 '수능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경쟁의 양상이 학생 전체를 경쟁시키지 않고, 등급간 경계에 있는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도에 수능등급제가 한해 도입되기도 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때 사교육 억제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채창균(2010)의 연구[71]에 따르면, 2008학년도 수능등급제를 적용받았던 학생들과 그 이전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이 줄었다는 것이다. 즉, 2007년 고3학생들이 수학 1.946시간, 영어 1.660시간인 반면, 2004년 고3학생들은 수학 2.527시간, 영어 1.89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수능의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제는 학생의 사교육 참여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연구된 바 있으며, 그 효과도 입증된 셈이다.

또한, 이는 채용시장에서의 학력차별 완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절대평가를 통해 변별력을 약화시킬 경우, 대학은 선발경쟁보다는 입학 후 학생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일 또는 비슷한 등급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 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 대학 군간 졸업생 역량경쟁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입학보다는 졸업에 더 의미를 두게 되며, 기업도 입학성적에 따른 출신대학이 아니라, 실제역량을 평가하여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기업은 소위 SKY출신에 대해 무작정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제도개선을 위한 두 번째 대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목고와 일반고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목고는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의미하는데, 이들 고등학교는 애초에 해당분야에서 재능이 있거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였다. 그래서 설립초기에는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큰 주목을 끌지 않았다. 실제 입학하는 학생도 적성이나 진로를 염두에 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들 학교가 특목고로 지정이 된 후 교육과정을 입시중심으로 운영하고 실제 입시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고교 서열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목고가 애초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과학고는 과학분야에, 외국어고는 언어에 재능이 있거나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진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육내용도 입시중심이 아닌 해당분야의 자질을 키우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특목고 졸업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게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71) 김영철, 김희삼,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 분석과 평가', KDI, p.124에서 재인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같은 필요는 현재 중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와 그 맥이 닿아 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다양한 진로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 취지대로 한다면 특목고 진학은 다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유사하게 진로에 따른 진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절대로 대학입시를 위한 유리한 고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개선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대안은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다. 분명 제도의 미흡이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사교육 동기가 형성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런 제도의 취지나 운영이 개선되면 진학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학원에 보내는 적기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72](최형재(2008), 김지하, 김정은(2009), 강창희, 이삼호(2010)). 강창희(2012)[73]의 연구 또한 사교육이 성적향상효과가 아주 미비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김진영, 오준범(2013)은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사교육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종합해보면, 굳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이지성이 그의 글[74]에서 제시한 사례를 인용한다. 필자(이지성)가 초등학교 교사시절 다른 학교의 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학부모에게 '우리 아이들도 걱정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치를 취하자'라고 건의했을 때 그가 들었던 답변이 이랬다고 한다.

---

72) 강창희, 박윤수(2013), '사교육의 성적효과: 평균효과와 분위효과', 제7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논문집, p.60에서 재인용

73) 김진영, 오준범(2013), '종단자료를 통해 본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 제7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화 논문집, p.6에서 재인용

74) '교육이 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다음 뉴스펀딩 8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선생님 우리 학교 애도 아니잖아요.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업분위기 해치는 일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의 목숨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어쩌면 학부모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Ⅵ. 나오며

2014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어린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들은 4가지를 요구하였다. 우선 시험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둘째, 자발적으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학교숙제와 각종 학원 숙제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원에 다니는 결정권을 아이들에게 달라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과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소파 방정환에 의해 약 90년 전에 주창되었던 아동의 놀 권리[75]는 오히려 퇴보한 듯하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보다는 무거운 가방을 멘 채로 학원행 '봉고'에 몸을 싣는 것이 당연한 오늘이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사교육이 아동의 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동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놀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75) 방정환은 1923년에 아동권리공약 3장을 발표하고, 그 중 세 번째 공약으로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라고 명시하였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4.1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참고문헌>

강도윤(2013), '원하지 않는 사교육은 어린이 권리침해일까?', 2013 어린이 연구원 보고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pp.35-39.

강창희, 박윤수(2013), '사교육의 성적효과: 평균효과와 분위효과', 제7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논문집, pp.59-78.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영재교육 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김광현, 노원실, 박경주, 유동철, 정윤지(2014),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우리들', 초록우산 어린이 연구원 연구보고서, pp.53-80.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Vol. 21, 청소년 정책연구원.

김진영, 오준범(2013), '종단자료를 통해 본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 제7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화 논문집, pp.3-27.

김영철, 김희삼(2012),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 분석과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김외숙, 박은정(201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pp.119-132.

김혜숙, 한대동, 오경희(2011), '중학생의 사교육 의존의식과 문화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7(3), pp.1-28.

김혜숙, 한대동, 남현숙(2012),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1), pp.251-278.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Ⅰ, 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계획('15~'19)』 수립(2015.05.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3),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2013)', 정책대안연구소 설문조사 모음집, pp.282-3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 홈페이지(http://data.noworry.kr)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2014), '주요 학원들의 수학/과학 선행교육정도(3.8년→4년)가 더 심해져, 학원의 선행교육을 법률로 규제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2014) '2014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 결과보도'(2014.07.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서울특별시 교육청(2014), '2014 간편한 서울교육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e-book.

양미선, 김길숙, 손창균, 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2014.12.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2014),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이봉주·유민상(2014), '한국아동의 주관적 행복: 국제비교연구',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이부미(2009), '공동육아 놀이문화의 구성요소 및 교육적 의미 탐색', 생태육아연구 8(2), pp.1-33.

이슬기, 최현주(2014),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한다',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은회 국회의원, pp.3-79.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2015) 2015.05.04 전국 시도교육감,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어린이들의 놀 권리,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 제시-

좋은교사 편집부(2015),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 좋은교사 7월호

진석언, 이재호, 이순주, 원영실, 최선일(2015), '영재교육 영역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 2014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교육부.

최현주(2015a), '영유아 정신건강과 조기인지교육', 영유아정신건강과 조기교육 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pp.1-42.

최현주(2015b), '영유아 한글 사교육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글교육 책임지는 초등 교육과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방안을 모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pp.11~53

통계청(2010), 2009 생활시간조사 보도자료 및 통계표,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청(2015), 2014 사교육비 조사 보도자료 및 통계표,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청(2015), 2014 생활시간조사 보도자료 및 통계표,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청(2014), 사회조사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연구: PISA 2012 결과보고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초등학생 사교육비 가계부담 여전', 한국소비자원.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박진우, 손주환, 임수현, 양효현(2014a), '한국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방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양효현, 서예지, 박진우, 손주환, 임수현(2014b), '한국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仙田満 · 岡田英紀(1993) こどもの遊び環境の構造的変化に関する研究 - 横浜 山形における経年比較調査による -都市計画学会論文集 都市計画学会論文集 28, pp.763-768.

American Time Use Survey Homepage(http://www.bls.gov/tu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3), 'General comment No.17(2013),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icle 31)', United Nation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록>

1. 개정안 법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2(휴강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강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는 9:00부터 19:00까지, 초등학교 재학생은 09:00부터 20:00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09:00부터 21:00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10. 생략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4조의2에 따른 휴강을 하지 아니한 자 2.~11.은 현행의 1.~10.과 같음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4조의2에 따른 휴강을 하지 아니한 자 2.~6.은 현행의 1.~5.과 같음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유아교육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되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학습위주의 교과를 방과 후 과정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 영유아보육법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학습위주의 교과를 특별활동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의5. 제29조제5항의 보건복지부령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현 행	개 정 안
③「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제1항의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안】 법 제8조 제4항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는 행위”라 함은 학교별로 공시하는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제9조의 시·도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지역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단, 겨울방학 기간에 한하여,**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보다 **한 학기** 앞선 내용을 교육하더라도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④「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미취학아동 및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과를 학습하려는 초등학생의 선행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해당 교과가 최초로 개설된 학년의 수업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청소년 의견청취

류주영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청소년 의견청취

류주영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F1 레이싱 대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대회는 최고의 자동차와 카레이서들이 자신들의 속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카레이서들은 의무적으로 최소한 1번은 정차하여 차를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점검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야말로 대참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기계도 휴식과 수리가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인 학생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휴식이 부족할까요? 사교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제가 좋아했던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그냥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5학년 때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놀던 태권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학원에 가는 날들은 1주일 중 4일이였지만, 학원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주는 숙제 덕분에 집에서도 사실상 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피곤해서 집에서라도 쉬고 싶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심지어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수업시간에도 항상 학원숙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집에서도 숙제를 하는 일상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숙제를 하루 분량을 끝내면, 숙제를 다 했다는 증거로 숙제를 촬영하여 선생님께 보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와 수행평가를 하고 순간 시계를 보면 시간은 어느새 12시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저는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수업은 대략 오후8시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자습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실에서 감독 교사 없이, 자율적으로 자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기에, 통학시간이 최소한 1시간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수업이 끝나면 항상 학생들로 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방과 후 수업만 듣는다고 해도 집에 도착하면 9시 30분이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의 숙제, 정규수업의 숙제와 수행평가 등을 하고 나면 또다시 어느 순간 시계바늘은 새벽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오전7시 전에 집을 나서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교육과 방과 후 수업을 받은 목적은 바로 성적향상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서 학원과 방과 후 수업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항상 못해도 90점 이상을 유지해 항상 친구들과의 성적경쟁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직접 뛰어노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항상 친구는 경쟁자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성적향상을 이루기 위해 친구와의 추억이라는 대가를 치룬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적은 올라갔어도 저의 학교생활은 친구와의 소통과 놀이가 아닌, 그저 공부로만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적표를 받을 때는 그렇게 점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성적표를 보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야 뒤늦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든 것을 안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이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엇보다도 어릴 때 친구와의 추억을 성적에 대한 대가로 치룬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추억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구매할 수도, 그때가 아니면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래 학교는 교과과정만이 아니라,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축소판 내부에서의 사회성과 인성 등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기르는 기능을 반드시 함양해야 합니다. 학원은 그저 교과만을 가르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공식적인 명칭이 학교이고, 정규 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과의 기준을 따른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학원일 뿐입니다. 지금 학교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교 내부에서의 성적경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학교가, 과연 진정한 학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학원의 모습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학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에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와 성적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교육의 압박에서 벗어난, 아니 사교육이 아예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더욱 양질의 교육을 실행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어른들이, 여러분께서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 저같이 힘없는 학생들이 아닌 여러분 한분 한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토론문

토론

탁경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의 놀 권리와 사교육』에 관하여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통계지수가 발표되면서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와 사교육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치밀한 분석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두 분 발표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발제의 전체적인 방향, 즉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만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한 각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할까 합니다.
2. 우리나라는 1991. 11. 20. 이미 UN CRC를 비준하였으므로, UN CRC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헌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별도의 이행법률이 없더라도 현행법상 아동의 놀 권리는 충분히 법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헌법 제37조 제2항),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종의 제도와 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습니다(UN CRC 제31조 제2항). 또한 국가는 아동의 놀 권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①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교육과 아동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②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 ③ 사인(私人), 특히 부모의 사교육 강요로부터 아동의 놀 권리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보호하는 것은 모두 UN CRC의 이행을 위해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제는 이러한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적 보육·교육 영역에서 놀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학습량을 줄이면, 수요자(정확히는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중한 사교육은 결국 부모에 의한 아동의 놀 권리 침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교육도 못하게 하는 방법. 둘째,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도록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4. 노용운 연구위원님의 결론은 주로 첫 번째 방법으로 모아지는 듯합니다. 노용운 연구위원님께서는 놀 권리 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크게 여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능 절대평가제의 도입. 둘째,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과학고·특목고의 정상화. 셋째, 학부모의 인식전환. 넷째, 전국적인 학원 영업시간 및 영업 휴무 규제. 다섯째,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과목 위주 특별 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 여섯째, 학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 이러한 방법들은 사교육을 통제하는데 분명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5. 첫째, 학원의 영업시간 규제나 선행교육 금지, 영유아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전환 등은 그것이 국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을 때에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 의한 감독과 행정처분이라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규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교육기관을 통제한다고 해서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교육이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교육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학원이나 영유아 교육기관으로부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학원 등 외의 사교육, 가령 개인교습이나 그룹과외 등으로 시장을 옮겨갈 뿐입니다. 이른바 '풍선효과'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

다. 이는 매우 슬픈 일인데, 개인교습이나 그룹과외는 학원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어 결국 부모의 자본에 따라 자녀의 학습기회가 좌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6. 둘째, 이러한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학원 등 외의 사교육까지 모두 금지내지 규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개인교습업자들은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어느 정도 계도 및 규제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교습행위를 모두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금지를 하더라도, 수요가 살아 있는 한 공급자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수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육의 전면적인 금지는 결국 사교육을 음지로 이동시킬 뿐입니다. 1980. 7. 30. 과외금지조치가 결국 부유층의 비밀과외 성행으로 이어졌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의 심야영업과 선행학습을 금지해봤자, 밤 12시에 수업할 과외선생을 구해오는 부모의 의지를 국가가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7. 셋째, 그렇다면 특정한 행위를 행정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수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요를 봉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요자를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입니다. 사교육 자체를 범죄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80. 7. 30. 과외금지조치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였던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이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므로, 사교육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8. 물론 부모의 교육권이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교육권에 의해 아동의 행복추구권이나 신체의 안전 등이 침해되는 경우,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학대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강한 추정이 살아 있는 이상,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그것이 학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이라는 '통제'를 통해 수요를 봉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9. 그렇다면 역시 정책은 공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즉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을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것, 그러면서도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3.에서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교육의 목표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바람이 '승리'에 있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10. 이러한 유형의 사교육 수요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노용운 연구위원님께서 제안하고 있는 대책 중 앞의 세 가지, 즉 수능 절대평가제의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학부모의 인식전환은 모두 이러한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상대로 동일한 시간에 통일적인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보통의 수준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뛰어넘는 학업을 성취한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창의와 개성에 기초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해서라고 해도, 국가에게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막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재교육이나 대학의 우수학생 선발 등은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전환을 통한 수요의 통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11. 다소 장황해진 감이 있지만,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수요가 있는 한, 사교육 공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도, 공교육의 개선을 통해서도 사교육을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사교육에 관한 수요와 공급 중 어떤 것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이 즈음에 이르면, 제도와 정책으로 아동의 놀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12. 애써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저는 제도와 정책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자체가 아동의 놀 권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논다'는 행위는 본래 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아동에게 놀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부모에게 아이들을 놀게 하라고 명령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부모가 아이들을 못 놀게 막는 행위를 막아주는 것뿐입니다만, 부모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국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그 때마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개 아동의 놀 권리와 교육권을 조화롭게 실현시켜 준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13. 아동의 놀 권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인물은 아니겠습니다만, J.S. Mill(부친의 조기교육 신념으로 인해 3세때 그리스어를, 8세때 라틴어를 '선행학습'해야만 했던 불행한 사람!)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행해져야 할 일이 정부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기보다는 개인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것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어서, 또는 그 일이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서는, 친히 그 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큼 적임자는 달리 없다."는 것입니다. 사교육과 놀이야말로 그 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부모와 아동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4. 어떠한 사교육을 받고, 언제 놀 것인지에 대해 부모와 자녀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 역시 부모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상주의에 불과하겠으나, 이것이야말로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UN CRC에 부합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UN CRC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그러므로 모든 아동은 사교육과 놀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부모와 제3자, 그리고 국가에게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수립자 자신이 놀 권리의 실현에 집착하여 아동을 제도의 객체로 보고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아동이 주체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사교육에 의해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놀이를 강제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은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 놀이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부모와 교사와 모든 사교육 관계자들에게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그 협상의 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입니다.
16. 금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의 자율성이 가정과 학교와 온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놀이만이 가질 수 있는 무강제(無强制)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육권에 짓눌린 놀 권리와 쉴 권리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 놀 권리 침해 가능성과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한 Feedback

오명화 (영유아 부모)

오명화(남편과 함께 영국의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방문했고 충남 홍성으로 귀농해서 살기도 했다. 딸아이를 공동육아 모임으로 양육했고 지금은 동네 엄마들과 부모커뮤니티 산별아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 첫 번째 발제문에 대하여

첫 번째 발제문의 경우 내용이 축약되어 저자의 논지를 충분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본 발제문은 문제의 원인을 한국 사회가 “표준화된 행복과 성취라는 틀 안에서, 상대화되고 초라해진 자신을 어떻게 되살리어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함(7p)”이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 중 하나로 “주체적인 인권의 인지”(12p)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실존을 고민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환경’에서 찾으신 것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안의 사례로 제시하신 박진영의 글에는 몇 군데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사례의 삶의 목표가 결국 이 사회가 추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최고의 안무가”, “거부”라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제문의 제목만 봐서는 놀 권리와 쉴 권리가 교육권과 어떤 갈등을 빚는지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발제문 만으로는 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로 국한된 것 같았습니다.

● 두 번째 발제문에 대하여

놀이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 사교육인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두 번째 발제문은 일상생활에서 놀이 운동을 해온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제가 파악하기로 발제문의 골자는 놀이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 사교육에 있으므로 사교육의 영향력을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논지는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난 4년간 동네 놀이터에서 놀이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을 몰아내는 가장 큰 원인이 사교육이란 사실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교육과 공교육을 망라해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육이 과연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인간답게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작년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인 것은 한꺼번에 소중하고 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어떤 인간을 길러 왔는지를 참담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위험을 보고도 판단할 수 없는 인간, 첫 번째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는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키워왔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교육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통념적으로 교육이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가 추구하는 바는 곧 사회가 추구하는 바이며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사건은 경영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기업의 탐욕과 인간을 인간답게 길러내지 못한 - 인권이 경시되고 있는 - 우리 사회(학교)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건의 공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놀 권리라는 인권 침해의 원인이 사교육 업계에만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부조리'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합작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우리의 실존을 지난 1년 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성찰 없이 모든 책임을 사교육 업계에 떠넘겨 버린다면 인간의 존엄을 경시하고 배금주의에 물든 공교육과 우리 사회에 면죄부를 주는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부조리가 사교육이란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모습, 다른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법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주제를 논의할 만큼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법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둘째 그리고 무엇보다 놀이권 확보를 위한 방법이 놀이헌장 제정과 놀이시간 확보, 놀이공간제공, 놀이개발 및 보급, 놀이지도자 확보와 같은 놀이 정책 수립이나 법제정으로 귀결되는 경향에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속한 모임(부모커뮤니티 산별아)은 놀이 운동을 통해 참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모 책모임을 통해 자본주의와 놀이와 마을공동체에 대해 공부했고, 동네 놀이터에서 전래놀이터를 운영했으며, 동네 뒷산에 생태놀이터를 열었습니다. 생활 쓰레기가 버려진 동네 정원을 주민 참여를 통해 텃밭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저희 모임을 여가 생활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자녀가 저희 모임에서 충분히 놀며 회복되자 다시 학원에 등록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4년의 시간 동안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가 자신의 실존을 고민하는 인간이 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놀이권에 대한 논의가 관주도 혹은 전문가 주도로 이뤄진다면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하고 방기하는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룰(법)에 미친나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교통공학자 한스 몬더만Hans Mondeman은 교통 표지판으로 도배가 되어있는 독일의 도시 봄테(Bohmte)에 교통표지판도 신호등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는 길shared space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길이란 이동 공간일 뿐 아니라 공동체가 연결되는 사교의 장이라는 원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활기를 띄고 교통사고는 현저하게 줄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들었다고 합니다.

몬더만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면 우리는 결국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쉐어드 스페이스는 다들 자유롭게 자기의지와 판단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단 그 의지와 판단 속에는 배려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말해 각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믿고 책임을 위임한다면 그에 걸 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부조리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한스 몬더만이 증명했듯이 스스로의 삶을 더 많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과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혹시 도로에 수많은 표지판을 세우듯 인간을 이끌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불신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의 비대칭이 불안의 원인일까?

셋째 40p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학부모가 갖는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형태의 불안에 영향을 받는 학부모는 이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성공)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에 대한 준비가 취업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란 가치에 충실한 무엇이라면 입시 정보의 비대칭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속성은 결국 일종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없어지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 상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반 일리치가 독특하게 정의한 '가난한 사람들(자립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교육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 배움을 자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생산(사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9시 등교라는 인권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교육 상품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배움의 자립에 대해서는 독일의 영유아 보육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선진국으로 주목받는 핀란드,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은 영유아를 위한 탁아 및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독일은 관련 복지 정책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세 미만의 영유아는 부모가 양육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놀이와 놀이터란 무엇일까?

넷째 프로이드는 건강한 인간이란 일과 사랑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일이란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이란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놀이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프로이드의 정의를 빌려 건강한 인간을 '일과 놀이가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과 놀이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놀이를 전래놀이, 스마트폰 게임과 같은 특정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놀이터를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동산 혹은 동네 한 구역에 만들어진 공간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어린이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일과 놀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비형식적으로 반복됩니다. 예를들어 한 아이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늦게 온 어떤 아이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구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합니다. 처음의 술래잡기는 놀이(하고 싶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울리기 싫은 친구가 끼어들면서 한 아이에게 놀이는 일(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그 상황을 놀이(하고 싶은 것)로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또 시간이 지나 그 아이도 친구를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습니다. 다시 놀이(하고 싶은 것)가 된 것이지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이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참여하면서 밀가루 반죽은 놀이로 바뀝니다. 물론 딸아이의 참여를 귀찮아하는 엄마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과 놀이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생명체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행위 자체를 놀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놀이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놀이터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놀이며 일상이 놀이터가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이란 '그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대공원은 동물원의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살면 먹이도 천적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사는 것이 돌고래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돌고래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놀이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란 단지 노는 방법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처한 일상생활에 함축된 가치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아이들도 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비와 경쟁과 고립이라는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놀이와 놀이터를 논의함에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하며 어떤 일상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놀이와 놀이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놀이에 관한 강의를 가면 꼭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노는데 공부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잘합니까?" "잘 놀면 뇌가 발달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과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놀이를 성공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공해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놀이를 인간의 존엄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놀던 놀이터는 동네 골목과 뒷산과 친구 집과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이 벌어지는 삶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놀이란 독일의 놀이터 디자이너 귄터 벨치히가 지적했듯이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행위'이므로 그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했던 모든 행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생활에는 부모나 이웃처럼 유대관계가 있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에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면서 부모와 이웃 같은 어른들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졌습니다. 과거 일상생활이란 전부는 아니지만 어른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놀이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삶이란 드넓은 놀이터와 일상생활이란 무한한 놀이를 어린이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그 미안함을 보상하기 위해 동네 놀이터에 값비싼 놀이기구를 채우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바로 어린이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어른들의 착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들은 자동차가 점령해버린 골목에서, 야생성이 살아있는 동네 뒷산을 대신해 컴퓨터 게임 속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빈집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그 일상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고 느끼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놀고 있습니다. 그곳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경쟁과 소비와 고립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상생활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인권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일상생활이란 놀이이므로 놀이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놀이권을 논하기에 앞서 놀이와 놀이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글을 마무리하며

끝으로 제 글을 마무리 하며 교육계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교육의 폐해를 논하기에 앞서 지금의 교육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진영 모두 놀이와 놀이터에 대해 이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토론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어린이 놀이 교육정책의 방향

천미경 (강원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놀이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015년 신년사에서,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과 놀이 공간, 그리고 놀 거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는, '어린이 놀이헌장'의 필요성 제기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5월 4일 국회에서 제93회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였다. 또한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 추진과제도 발표하여 놀이 정책의 실천적 의지도 표명하였다.

놀이 헌장이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0대 공동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이의 놀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기 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경쟁으로 내모는 잘못된 교육열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분의 발제 원고는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과 놀권리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 어린이 놀이 관련 10대 공동정책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한다.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

○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1.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놀이시간 보장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학생들 놀이시간 확보 및 여건 조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학교 내·외에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3. 초등학교 운동장을 놀이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4. 학교 내·외 놀이 공간 마련(빈 공간에 놀이 소재 배치)
5. 학교 내·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6. (방과후) 교육과정에 다양한 놀이 소재와 프로그램 제공
7. 학생 교내 행사(운동회, 체육 대회 등)에 놀이 프로그램 운영
8. 돌봄 시간 놀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놀이 교육 실시

○ **어른들이 놀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 놀이 관련 연수 개설 및 놀이 동아리, 연구회 적극 지원
10.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의 필요성 홍보 강화

첫째, 놀이 시간 확보의 문제이다.

특히 학교에서 놀 시간을 확보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과정 편성(수업 시간)으로는 1일 100분 확보도 쉬운 일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0분 수업에 10분 쉬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놀 수 있는 시간이기 보다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정규수업만으로 끝나면 아이들은 놀 시간이 충분하겠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활동과 학원 등 사교육으로 아이들은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운영에서는 1-2교시 블록수업을 하고 놀이 시간을 20~30분을 주는 정도로 하여 100분 정도는 확보해서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강원도내 많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저학년의 경우 블록수업 즉 80분을 쉬지 않고 수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예전처럼 수업형태가 일제식 강의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서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수업시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도 줄여서 학교 일과 시간을 여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업시수와 수업량에 대한 불만이 늘 있어왔다. 교육과정 개정 될 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다 혹시 수업 시수는 줄어드는지, 교과 수는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수업일수는 줄여놓고 시수를 줄이지 않아서 힘들어 하고 있다. 심지어 쉬는 시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시간에 다하지 못한 과제도 해야 하는 경우 등 현재의 교육과정의 수업 시수와 수업의 량은 문제가 많다. 점점 갈수록 학습량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아이들 자기주도학습력을 신장 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활동 운영도 변화가 필요하다. 교과학습 중심에서 특기적성활동으로 바뀌기는 했지만(강원도의 경우 교과학습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수업이기 때문에 놀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군지역 학교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방과후 활동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과 방과후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오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고 싶다. 방과 후 활동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저학년은 돌봄의 기능이 더 중요한 시기이므로 돌봄을 놀이중심 수업으로 바꿔 아이들을 마음껏 놀도록 하는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놀라고 했더니 '어떻게 놀아야 하냐요?'라는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시간을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놀이 공간 확보의 문제이다.

학교 안의 놀이 공간은 운동장이 좋은 공간이다. 학교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놀이 기구를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최근에는 체육관, 다목적실을 지어 운동장이 좁아져 그나마 있는 놀이기구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큰 규모의 학교운영도 문제가 있다. 학생 수에 비하여 운동장이의 크기가 너무 작다. 저학년은 고학년 형, 언니들에게 밀려서 저 구석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경험도 있다. 운동장을 축구만 하는 곳이 아닌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공간과 친구와 도구만 있으면 논다. 아니 도구가 없어도 논다. 혼자서도 잘 논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설치 기준과 각종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안전의 문제는 학생지도와 시설관리만 잘 한다면 안전이 걱정되어서 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놀이 시설이 있어야 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구석구석 모든 곳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인조 잔디운동장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도교육청의 발표도 놀이 공간을 고려하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 밖의 놀이 공간은 온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뿐 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의 관심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사실 놀이 공간은 아이들만 위한 것은 아니다. 자연생태 공간, 가족놀이 공간, 문화행사 공간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이 곧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다. 놀이 공간의 확보가 인성교육, 가족의 화목, 지역사회 발전의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아이들의 진정한 배움터가 될 것이다.

셋째, 다양한 놀이 경험 제공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또 다른 공부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놀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놀게 해주었더니 끝난 후에 '놀면 안되나요?'라고 해서 놀랐다는 어느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형태의 공부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요즈음 저경력 교사도 놀이의 경험이 부족 한 것은 마찬가지다. 50대 이전의 세대의 교사는 학원세대, 과외세대로 노는 것보다 공부가 더 익숙하고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교사의 경험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 연수를 시켜서 지도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적 놀이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혀야 하는데, 입시위주의 교육이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놀이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아이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놀이와 친숙하게 되면 좋겠지만 의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방과후 프로그램, 체육대회, 돌봄 시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교육은 학교 현장에 실천 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넷째, 어른들이 놀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이다.

교사의 놀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 글은 강원도교육연구원이 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최한 제9회 강원교육 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교사의 글이다.

>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서 놀이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교사이다. 10분의 시간이 온전히 주어진다면 그 짧은 시간동안에도 아이들은 정신없이 논다. 40분간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하지만, 수업이 조금이라도 늦게 끝난다면 아이들의 짧은 10분은 더 짧아지게 된다. 온전히 10분이 주어지고 아이들이 놀다오면 발갛게 상기된 얼굴과 놀이의 잔상으로 인한 시끄러움, 왠지 어수선해지는 교실분위기가 학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10분의 쉬는 시간을 놀지 못하게 한다. 놀아도 교실에서만 놀고,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못한다. 아이들은 거세당한 소처럼 얌전하게 놀아야만 하는 것이다. 화장실만 다녀오고 수업시간 5분전부터 수업준비를 하고 책상에 앉아있으라는 교사의 말에 아이들은 10분 놀이를 포기한다. 교사의 다른 문제 하나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유년시절에 친구들과 마음껏 놀아보지 못한 교사와 아이들과 같이 놀지 못하는 교사, 놀이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놀아보지 못한 교사들에게 놀이는 그저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무의미한 시간이고, 아이들과 같이 놀지 못하는 교사에게 놀이는 단순히 수업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놀이가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주는지 모르는 교사들에게 놀이는 다치기나 하는 교사에게 귀찮거나 위험한 부담을 주는 시간일 뿐이다. 이렇게 놀이를 모르고, 놀 줄을 모르고, 왜 놀아야하는지 모르는 교사들에게 놀이는 그저 수업의 방해꾼이고, 다치게 하는 시간이고, 친구들과 말썽만 부리는 시간이 된다. 그저 놀이는 아이들만의 삶이고, 수업을 방해하는, 교사를 귀찮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
> (홍천 구송초 교사 반원호)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업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학교는 늘 그래왔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업무가 하나 또 오는구나,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새로운 업무가 부여 될 지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교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지만 강제성 보다는 관심이 있는 교사 중심의 동아리나 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확산 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놀이 정책 추진을 위한 TF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교사중심, 현장 중심의 지원을 계획하고 추진 할 예정이다. 이미 놀이 관련 연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수과정도 다양하게 제공 할 예정이다. 사실 놀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학부모이다. 놀이 헌장 선포 후 언론,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알 수가 없다.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놀이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학부모도 있다. 현재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쟁과 서열을 조장하는 학교교육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내용을 자세히 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펴보면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시대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현장이다.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는 사회단체, 지역 등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발제문에도 제시하셨지만 학부모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마음을 전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국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놀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놀이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를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자 심각하게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놀기 어려운 어린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의 대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무척 놀고 싶어 했고 노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놀이를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놀이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놀이를 원했습니다. 노는 시간이 없는 우리에게 수업이 끝나고 잠깐 쉬는 10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춘천 성림초등학교 6학년 박 신 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 인 쇄 | 2015년 7월
| 발 행 | 2015년 7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643 | F A X | (02) 2125-0922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 978-89-6114-424-7 9334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